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1월 | 2024/01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PCT 텍스트 처리 전담반

새로 구성된 PCT 텍스트 처리 전담반(PCT Text Processing Task Force)의 첫 회의가 2024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가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전담반은 PCT에 따른 출원, 처리 및 공개 요건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자문을 제공하여 국제단계에서 완전한 텍스트 형식의 국제출원의 제출 및 처리의 효율화와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이를 통해 PCT 공개출원의 품질을 개선하고, 방식상 흡결을 줄이며, 효율성을 더욱 증대하고, 출원인들에게 더 많은 셀프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며, 컬러도면의 제출 및 공개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국제사무국은 완전한 텍스트 형식의 출원 처리를 더욱 진전시킬 방안에 대해, PCT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과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에서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는 사용자 기구 대표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해당 전담반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회의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1130](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1130)

## 변환 전 형식의 문서 수리

수리관청의 변환 전 형식의 문서 수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표가 WIPO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 섹션 706에 따라 수리관청은,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 본문의 변환 전 원본인 전자적 형식의 문서(즉, 변환 전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출원 시의 해당 국제출원에 변환에 따른 오류가 발생했음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해당 변환 전 문서를 토대로 오류를 정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에는 섹션 710(a)(iv)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수리관청들의 현행 방침이나와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https://www.wipo.int/pct/ko/texts/preconversion-format.html>

##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제 17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24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

## PCT 정보 업데이트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년 1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EUR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EUR	104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EUR	52
- 항공우편 추가요금: .....	EUR	[변동 없음]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2024년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 지식재산(IP)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혁신과 창의성으로 공동의 미래 만들기

2024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식재산(IP)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조명해 볼 기회입니다.

2024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 테마는 “지식재산(IP)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혁신과 창의성으로 공동의 미래 만들기”입니다.

지식재산권이 뒷받침된 혁신과 창의성으로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업적을 축하하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영감을 얻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에서 제안 활동들과 정보, 홍보 자료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n/web/ipday/2024-sdgs/index>

대중의 인식 제고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맞춤화된 세계 지식재산의 날 캠페인을 직접 개발하고 캠페인 대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n/web/ipday/2024-sdgs/create-your-campaign>

##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PCT) 개론

본 과정은 PCT에 대한 온라인 원격학습 기초 과정으로(DL101PCT), PCT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 개요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자기학습으로 진행되며 이해도와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본 과정의 모듈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무료이며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제공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CT.DistanceLearning@wipo.int

## 유용한 도움말

### 내 WIPO 계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Q: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사내 보안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PCT에서 제 PCT 출원에 대한 보안과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ePCT에서 질문자분의 PCT 출원에 대한 보안과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보안과 비밀유지의 이유로 WIPO 계정은 회사가 아닌 개개인의 이름으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PO 계정 보유자가 실행한 각 행동을 개인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최선의 방법들을 따라 WIPO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제출원에 매끄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1. 이메일 주소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WIPO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해당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복구하고, 내 PCT 출원의 수명주기와 관련한 중요한 ePCT 통지사항을 수신하며, ePCT의 새로운 버전과 특징, 기능 및 새로 나온 웨비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 각 이메일 주소는 오직 하나의 WIPO 계정과 연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복구 이메일 등록하기

WIPO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복구 이메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언제든지 사용자 ID 및/또는 비밀번호를 찾고 WIPO 계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WIPO 도움말](#) 페이지에서 자세한 복구 이메일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두 가지 인증 방법 사용하기

WIPO 계정에 대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외에 언제나 적어도 두 가지의 인증 방법을 설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ePCT에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인증](#) 페이지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타인과 결코 공유하지 않는 등 좋은 보안유지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각 출원에 두 명의 eOwner 지정하기

워크벤치에서 각 출원에 대해 적어도 두 명의 eOwner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는 특히 한 명의 eOwner가 퇴사를 하거나 WIPO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팀원에게 접근권한이 매끄럽게 양도되게 하여 유용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내가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퇴사자들의 접근권한을 취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세부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내 국제출원 목록 엑셀 표로 다운받기

내 워크벤치에 있는 모든 국제출원의 목록을 다운받아 엑셀 표로 저장하십시오. 이와 같은 예방책을 통해 ePCT 밖에서 중요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접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ePCT 동영상 튜토리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최선의 방법들은 내 WIPO 계정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내용은 아래 ePCT 동영상 튜토리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ltimedia.wipo.int/wipo/en/pct/epct-best-practice-wipo-account.mp4>

내 WIPO 계정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은 [WIPO 계정 정보 변경](#)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갱신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협정**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PCT 정보 업데이트**

**CA 캐나다 (이메일 주소, 수수료)**

**EA 유라시아특허기구 (수수료)**

**EP 유럽특허기구 (수수료)**

**FI 핀란드 (수수료)**

**GE 조지아 (보호의 종류)**

**PL 폴란드 (국내법 규정)**

**RO 루마니아 (수수료)**

**US 미국 (변환 전 형식의 문서 제출)**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이집트 특허청, 인도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비세그라드 특허기관)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인을 위한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2월 | 2024/02 호

## 2023/2024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WIPO가 직접 제공하는 PCT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 목적과 함께 PCT 서비스들의 개선점 파악을 위해 2023/2024년 최신 PCT 사용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PCT 공개언어 10개로 진행되고 1700여 명의 응답자가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선택형 문항 외에 응답자들이 의견을 작성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와 작성된 상세 의견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WIPO의 PC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PCT 사용자의 90%가 WIPO가 제공하는 PCT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매우 만족(39%)하거나 만족(51%)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본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activity/pct-user-survey-2023-2024.pdf>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회를 놓치셨다면, PCT 사용자께서는 언제든지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에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이나 피드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pct.legal@wipo.int

다음 번 PCT 사용자 설문조사는 2025/2026년에 시행됩니다.

## PCT 뉴스레터 창간 30주년

3월은 PCT 뉴스레터가 창간된 지 30년이 되는 달입니다. 1994년 3월, PCT 뉴스레터 첫 호가 출간되었습니다. PCT 뉴스레터 독자들에게는 뉴스레터의 내용과 유용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공해주신 내용은 발췌하여 30주년 기념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말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ct.newsletter@wipo.int

이메일 제목은 “PCT Newsletter: 30 years”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WG/12/2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국제사무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따른 참여관청별 PCT 수수료 전달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역은 아래에서 2024년 1월 25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 25페이지부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4년 3월 1일부로,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http://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HN, IB, IL, IN, IQ, JM,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A,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년 3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USD	117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USD	59
항공우편 추가요금:	USD	12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유용한 도움말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Q:** 저는 미국의 지식재산 대리인으로, 독일 국적을 가진 미국 고객의 PCT 출원을 돋고 있습니다. 제 고객이 유럽 특허청(EPO)에 PCT 출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대리인으로서 해당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곳 또는 수리관청(RO), 그리고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결정됩니다.

PCT 규칙 19에 따라 출원인은 아래 중 하나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i)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i) 출원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제사무국

PCT 제 2 조(xii)에 따라 “국내관청”은 복수의 국가들로부터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모든 정부 간 당국을 포함합니다.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미국 고객이 미국 거주자라고 가정하면, 이는 고객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RO/US), 본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독일 특허상표청(RO/DE) 또는 유럽 특허청(RO/EP)에 PCT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무국(RO/IB)에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발명을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외 다른 세 수리관청 중 한 곳에 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해외출원 허가(foreign filing license)를 받거나, 아니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해당 선출원에 대해 국가안보 지시(national security order)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6 개월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140.html> 참고).

국제단계 동안 대리인으로서 해당 출원인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은 출원이 제출된 수리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PCT 규칙 90.1 참고). 각 수리관청은 대리에 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WIPO는 이를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에 반영합니다(<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인 경우, PCT 규칙 83.1의 2에 따라, 출원인의 거주지 또는 국적의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을 권한이 있는 자만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유럽 특허청이나 독일 특허청에 대해 절차를 밟도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특허상표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만 해당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유럽 특허청(RO/EP)과 독일 특허상표청(RO/DE)에 대해 (이들 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도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대리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도, 해당 고객을 대신해 이를 관청에 PCT 출원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기록될 수 없는 경우, PCT 규칙 4.4(d)에 따라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로서 기록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로써 보통 출원인이나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전송되는 통신을 수신하실 수 있고, 출원인을 대신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용 주소”로서는 출원인의 대리인으로서 출원서(또는 모든 후속 제출서류)에 서명하실 수 없습니다.

출원인의 서명을 받지 못하시면, 출원에서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모든 서명은 PCT 제 14 조에 따라 흡결로 간주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https://www.wipo.int/pct/en/guide/ip06.html#\\_correction\\_defects](https://www.wipo.int/pct/en/guide/ip06.html#_correction_defects) 참고). 해당 흡결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서명이 들어간 대체용지를 추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이 복수이고 이들 출원인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서에 출원인들의 이름이 기재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특정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제일 앞에 기재된 출원인이 규칙 90.2(b)에 따라 대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출원인들이 직접 본인들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선임한 경우 제외 - PCT 뉴스레터 2014/07-08 호(영문판) 유용한 도움말 “The importance of the order in which applicants are named in the request form where no common agent has been appointed” 참고).

질문자께서 해당 국제출원을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은 ePC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PCT 출원을 생성하는 사용자는 eOwner로 설정되어 ePCT를 통해 PCT 출원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서명(external signature)” 기능을 이용하면 승인받은 서명인(여기에서는 출원인)이 ePCT에 접속하지 않고도 ePCT에 있는 작성 중인 문서에 서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직접 출원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출원 제출 전에도 출원인이 출원에 접근해 필요한 곳에 서명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께서 출원인을 위해 통신문 초안(예를 들어,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요청 서한, 제 19 조에 따른 보정 요청 서한, 또는 출원의 취하)을 작성하고, 출원인이 해당 통신문에 외부서명으로 또는 ePCT에서 직접 서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RO/IB)에의 국제출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iling/filing.html>

ePCT를 통한 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67>

본 주제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뉴스레터 호들에 나온 유용한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04 호(영문판): 수리관청에 대해 출원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통신용 주소 기재하기

2019/03 호(한국어판): 출원 전략: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과 국내관청(또는 해당 시 지역관청) 중 어느 곳에 국제출원을 할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의 예)

2020/06 호(한국어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국제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양방향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캐나다 지식재산청 -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INPI))

###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 (수수료)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US 미국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필리핀 지식재산청, 이스라엘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 **일본 특허청에서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예정된 웨비나**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3월 | 2024/03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2023년 PCT 출원

2023년 PCT 출원은 2022년 대비 1.8% 감소하여 총 272,600 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69,610 건(2022년 대비 -0.6%)으로 최다 PCT 출원국의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미국이 55,678 건(-5.3%)을 기록했습니다. 일본(48,879 건, -2.9%), 대한민국(22,288 건, +1.2%) 및 독일(16,916 건, -3.2%)이 다시 한 번 각각 3위, 4위 및 5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출원국과 2023년 전체 PCT 출원 대비 각국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69,610 건	25.5%
2.	미국	55,678 건	20.4%
3.	일본	48,879 건	17.9%
4.	대한민국	22,288 건	8.2%
5.	독일	16,916 건	6.2%
6.	프랑스	7,916 건	2.9%
7.	영국	5,586 건	2.0%
8.	스위스	5,382 건	1.9%
9.	스웨덴	4,323 건	1.6%
10.	네덜란드	4,258 건	1.5%

상위 10개국 외에 인도(11위)가 PCT 출원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3,791 건, +44.6%).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2022년 출원 대비 증감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출원 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24/914의 부속서(Annex) 1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ressroom/en/documents/pr-services2024-annexes.pdf#page=1>

2023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출원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확인 가능합니다.

중국 소재 통신기업인 화웨이 테크놀러지가 2023년 6,494 건의 공개출원을 기록하며 7년째 최다 PCT 출원인의 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3,924 건), 미국의 퀄컴 인코포레이티드(3,410 건),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2,152 건) 및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1,988 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위권의 출원인들 중, 2023년 공개출원 건수에서 중국의 컨템포러리 엠파렉스 테크놀로지(+576.3%)가 가장 유의미한 증가를 기록하며 2022년 92위에서 2023년 8위로 상승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베이징 지티아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191.3%)가 2022년 85위에서 2023년 27위로 올랐습니다.

상위 10위권 출원인들과 이들이 출원인으로 기재된 2023년 PCT 공개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6,494 건
2.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한민국)	3,924 건
3.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3,410 건
4.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2,152 건
5.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1,988 건
6.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대한민국)	1,887 건
7.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1,863 건
8.	컨템포러리 엠파렉스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 중국)	1,799 건
9.	광동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코포레이션 리미티드(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중국)	1,766 건
10.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일본)	1,760 건

상위 50위권의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의 부속서 2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출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2023년 531 건의 공개출원으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PCT 시스템 최다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교육기관 중 다섯은 미국, 둘은 중국, 나머지 셋은 각각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소재한 대학들입니다. 교육기관들의 PCT 출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의 부속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PCT 공개출원에서 컴퓨터 기술(전체의 10.2%)이 다시 한 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디지털 통신(9.4%), 전기기계(7.9%), 의료기술(6.7%), 의약(4.7%)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개 기술 중 4개만 2023년에 성장을 기록했는데, 전기기계(+8.8%)와 운송(+7.7%)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반도체(+5.6%)와 바이오기술(+3.8%)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의 부속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2024년 PCT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PCT 실무그룹

제 17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24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다음의 주제들이 검토되었습니다.

## 국제출원 및 관련 서류 제출 매체

실무그룹은 PCT 규칙 89의 2의 제안 개정안을 제출하여 2024년 7월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문서 PCT/WG/17/15 참조). 제안된 개정안은 수리관청들이, 국제출원 및 후속제출서류를 서면이 아닌 전자적 형식으로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출원인에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해당 서류의 전자적 버전을 제출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수리관청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에 서면으로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과의 통신용 언어

실무그룹은, 국제사무국이 출원인 및 국내관청들과의 통신용 언어를 현재처럼 영어나 프랑스어로만 제한하지 않고 국제공개언어 10개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하도록 확대할 수 있게 PCT 규칙 92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2024년 7월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7/6 참조).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여러 다른 국내관청들에 참조로 전달되는 통신문(특히 모든 지정관청에 참조로 전달되는 서식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ePCT를 통해 요청 시 어느 공개언어로든 국제사무국 서식들을 볼 수 있도록 향상된 번역 툴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컬러 도면

실무그룹은 도면, 사진 및 기타 형식의 이미지를 구분할 필요성과 이들이 적절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컬러 도면을 포함한 국제출원의 제출 및 처리를 허용하도록 규칙 11의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구했습니다(문서 PCT/WG/17/12 참조).

## 비서면 개시의 인용

실무그룹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모두에 대해 관련 선행기술의 정의를 확대하여 비서면 개시를 포함하도록 PCT 규칙 33 및 64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2024년 7월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7/10 참조).

## 규칙 26.3의 3 추가 개정 - 제 3 조제 4 항(i)의 험결에 대한 보정통지

실무그룹은, 요약서나 도면의 텍스트의 언어가 국제공개언어와 다른 언어이지만 국제조사기관에서는 국제조사 수행을 위해 허용한 언어인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요약서나 도면의 텍스트를 해당 국제공개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서를 발행할 수 없는 규칙 26.3의 3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7/7 참조).

## 특정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정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

실무그룹은 PCT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5 번 항목(Item 5)의 기준을 유지하고 총회가 해당 기준을 5년 후 재검토 할 것을 2024년 7월 총회에 권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총회에 “특정 PCT 수수료 감면 기준 충족 국가들 목록 갱신 지침”(Directives for Updating the Lists of States Meeting the Criteria for Reduction of Certain PCT Fees)에 대한 개정안 채택을 권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7/5 Rev 참조).

## 기타 사항

실무그룹은 다음의 내용들도 검토했습니다.

- 특허심사관 훈련 조정(문서 PCT/WG/17/11 참조)
- PCT에 따른 기술원조 조정(문서 PCT/WG/17/19 참조)
- 전자적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문서 PCT/WG/17/9 참조)
- 글로벌 ID(global identifier)와 PCT(문서 PCT/WG/17/13 참조)
- 개인정보 보호와 PCT(문서 PCT/WG/17/8 참조)
- 선행기술 검색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문서 PCT/WG/17/14 참조)
- PCT 최소 문현 전담반에 대한 현황보고서(문서 PCT/WG/17/16 참조)
- PCT 온라인서비스(문서 PCT/WG/17/20 참조)
- 서열목록(문서 PCT/WG/17/3, PCT/WG/17/4 및 PCT/WG/17/18 참조)
- IP5 관청들 간 PCT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문서 PCT/WG/17/17 참조)
- 제 30 차 PCT 국제기관회의(MIA)에 대한 보고서(문서 PCT/WG/17/2 참조)

또한 실무그룹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PCT에 대한 정보공유 세션을 가졌습니다. 해당 세션에서 발표된 자료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

## 요약서 및 관련 문서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7/21)와 작업 문서들, 그리고 회의의 웹캐스트 동영상 및 음성-텍스트 변환으로 생성된 녹취록의 링크를 아래 WIPO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

## PCT 뉴스레터 창간 30 주년

“1994년 3월 창간 이래 PCT 뉴스레터는 PCT 사용자 여러분께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뉴스레터는 중요한 최신소식, 정보, 그리고 귀중한 유용한 도움말 칼럼을 전 세계 PCT 사용자들에게 매월 제공해 왔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뉴스레터의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번역본이 추가되어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T 뉴스레터의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하며, 매월 여러분께 뉴스레터를 전달하는 WIPO의 PCT 부서 동료들의 노고와 헌신에, 그리고 WIPO의 PCT 부서의 저희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보다 많은 정보와 더 큰 가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 및 기술 섹터(Patents and Technology Sector) 사무차장)

---

3월은 PCT 뉴스레터 창간 3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1994년 3월부터 33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독자들이 보내주신 축사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PCT 뉴스레터는 저희 일본 특허청의 업무에 아래와 같이 유용합니다.

- **유용한 도움말:** PCT 실무그룹, PCT 국제기구(P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등의 최근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얻을 때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관청으로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실제 상황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이해하기 쉽고, 저희가 일상 업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보여주어 매우 유용합니다.
- 아카이브가 공중에 공개되어 실제 사례들을 검색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 내용이 통합되어 있고 이용하기 편합니다.
- 일본어 번역본도 제공되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뉴스레터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특허청)

“저희는 PCT 뉴스레터에서 특히 유용한 도움말 부분이 기다려집니다. 유용한 도움말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되어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질문들이 그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된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명의 PCT 사용자)

“PCT 뉴스레터 첫 호 발간 30 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4년경부터 정기 구독자입니다.

뉴스레터에서, 특히 유용한 도움말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유용한 도움말은 조약 규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합의사항들, 가이드, 출원 현황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됩니다. 저에게 뉴스레터는 규칙, 시행세칙, 가이드 외에 항상 참고하는 귀중한 정보 출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재 제공되는 아카이브 검색 기능이 없어서 매월 유용한 도움말의 제목을 적어두었었는데, 이제는 새로 개발된 검색 기능으로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함이 개선되어 정말 좋습니다.

또한, PCT 시스템과 이를 둘러싼 배경이 매일같이 변하는 상황에서, 항상 국제적인 최신 상황 및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한 주제들을 다루어줍니다. 뉴스레터를 애용하는 사용자로서 앞으로도 뉴스레터를 매월 정독하고 뉴스레터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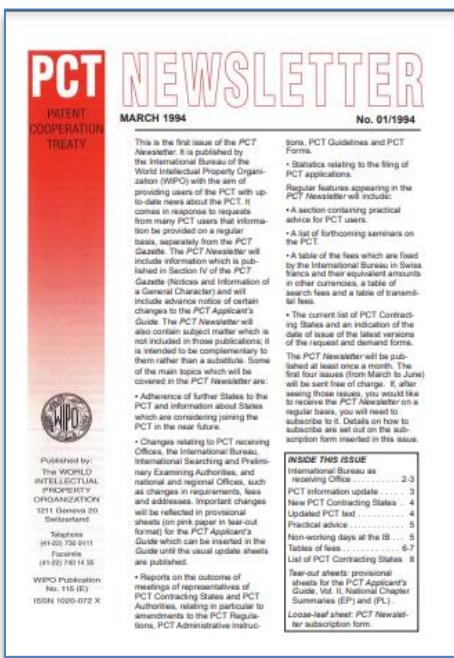
(의명의 PCT 사용자)

## PCT 뉴스레터 발행 30년에 대한 감회와 소고 - 매튜 브라이언(Matthew Bryan)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 국장

1990년대 초 PCT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PCT 체약국이 67개였고 PCT 출원은 34,000건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지금은 체약국이 157개이고 연간 PCT 출원은 270,000건이 넘습니다).

1990년대 초 WIPO 내 PCT 부서의 수장들은 PCT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PCT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효과적인 수단이 부재함을 깨달았습니다. 공개되는 PCT 관련 정보의 유일한 출처들은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할 만큼 잦은 빈도로 발행되지 못했고(PCT 출원인 가이드의 내용이 일 년에 두 번만 업데이트되었음), 아니면 실제적인 PCT 사안들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WIPO의 PCT 리더들에게 PCT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최신소식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정보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에 부소 바르텔스(Busso Bartels) 당시 PCT 법무국(PCT Legal Division) 국장은 월간 PCT 뉴스레터를 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4년 3월, 뉴스레터 첫 호가 발행되어 PCT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PCT에 대한 최신 소식과 유용한 도움말을 제공했습니다.



## 1994년 3월 PCT 뉴스레터 첫 호

처음 3년간 뉴스레터는 종이책자로만 발행되었고, 연간 구독료를 부과해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에 뉴스레터는, 낱장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었던 출원인 가이드에 대한 임시 대체용지나 추가용지를 뉴스레터 종이책자에 넣어 사용자들이 각자의 출원인 가이드 사본을 업데이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된 PCT 출원서의 새로운 버전들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종이버전 구독 옵션은 2007년 말까지 10년 더 유지되었지만, 1997년 1월 온라인 발행이 시작되어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의 콘텐츠가 인쇄와 우편발송을 통한 배포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긴 소요시간 없이 마감 후 몇 시간 내에 업로드되어, 사용자들이 최신 PCT 소식과 변동사항을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PCT 뉴스레터는, 처음 출간 시 혁신적인 변화였고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켰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레터는 이메일과 웹사이트보다도 여러 해 앞서 도입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WIPO의 PCT 직원들이 PCT 사용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후 WIPO의 저희 PCT 직원들은 PCT 웨비나, 동영상, 줌(Zoom), 웹사이트 콘텐츠와 ePCT 플랫폼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정보원들과 새로운 통신수단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월간 PCT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PCT 사용자들이 여전히 뉴스레터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정보나 교육을 위해 의존하고 있음을 그동안 계속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2023/2024년도 PCT 사용자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보면, PCT 뉴스레터 독자의 93%가 뉴스레터에 포함된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습니다. 또한 해당 최신 설문조사 응답들 중 다음의 두 예시와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PCT 뉴스레터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신 소식을 전해주고, 보통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유용한 도움말 부분이 좋습니다.”

“PCT 뉴스레터는 PCT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정보를 얻는 훌륭한 출처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PCT 뉴스레터의 발전과 지구력은, 1990년대 초 뉴스레터를 창간하는 비전을 가졌던 전직 WIPO 동료들을 포함한 많은 WIPO 동료들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분명, 오랜 기간 PCT 뉴스레터 편집자로 일한 데브라 콜리어(Debra Collier)의 이름은 영원히 뉴스레터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데브라는 1994년 첫 호부터 2022년 9월 WIPO에서 은퇴하기까지 28년이 넘도록 뉴스레터를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데브라의 은퇴 후 뉴스레터는, 마찬가지로 능력 있고 헌신적인 다른 몇몇 동료들이 이끌어왔는데, 이들 중 2005년부터 부편집자로 일한 카티아나 노리스 레비(Katyana Norris Levy)가 있고 또한 가장 최근에는 나탈리 비어드(Nathalie Beard)가 맡고 있는데, 두 명 모두 동료직원인 코린 줄리아드(Corinne Julliard)와 제랄딘 로드리게즈(Geraldine Rodriguez), 그리고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 내 모든 다른 직원들의 매우 든든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월간 뉴스레터의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번역본이 추가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로 뉴스레터 월간 번역본을 관리해 온 매우 헌신적인 여러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PCT 뉴스레터 발행 30년을 회고하고 그 탄생부터 함께 해 오며, 저는 지난 30년 간 매달 뉴스레터를 PCT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준 헌신적인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WIPO를 대신해 PCT 뉴스레터의 독자이신 PCT 사용자 여러분께도 뉴스레터가 존재한 오랜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창간 이래로 저희는 많은 피드백과 질문과 의견을 받았고 이는 뉴스레터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PCT 정보에 대한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타 피드백, 유용한 도움말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ct.legal@wipo.int

## PCT 정보 업데이트

### CN 중국 (우선권 회복 신청 관련 적용 기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정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 청이, 지정관청으로서의 동 청에 제출된 우선권 회복 신청과 관련하여 “비고의성” 기준을 2024년 1월 20일부로 적용한다고 PCT 규칙 49의 3.2(g)에 따라 국제사무국(IB)에 통지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또한 이러한 우선권 회복 신청 기간은 동 청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이며 신청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CNY 1,000 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CN)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 - 접근권한

출원인을 위한 아래의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Manage Access Rights Following a Rule 92bis Change Request (규칙 92의 2 변경 청구에 따른 접근권한의 관리)

해당 동영상은 ePCT에서 출원에 대한 접근을 자동 정지시키는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에 따른 ePCT 접근권한 관리 방법<sup>1</sup>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동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access\\_rights.html](https://www.wipo.int/pct/en/epct/access_rights.html)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때의 결과 및 국내단계에서의 잠재적 구제절차

Q: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서식 PCT/RO/133)를 받은 후에 새로운 PCT 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리관청에서 출원 취하간주 결정을 발행했습니다(서식 PCT/RO/117). PCT에 출원을 회복(res revival)할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A: PCT 규칙 16의 2.1(e)에 최초의 기간이 만료된 후지만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수료의 지연 납부를 허용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 외에 PCT는 수리관청의 출원 취하간주 선언 후 국제단계에서 출원의 회복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리관청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나면 해당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해당 지정국에서의 국내출원의 취하와 동일한 결과를 갖고(PCT 제 24 조제 1 항) 법적 효과를 상실합니다(PCT 제 11 조제 3 항 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수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아직 수수료를 납부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이 회복(reinstate)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가 가능한 원인들에 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20/03 호 유용한 도움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관청에, 질문자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 취하간주 결정을 검토하는 국내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을 확인해봐도 질문자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여전히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특허보호를 취득하기를 희망하시는 각 지정관청에 직접 권리회복을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sup>1</sup> ePCT 버전 4.13 출시에 따라 발효(4 월 초 예정)

PCT 제 25 조 및 규칙 51 은,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를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출원인이 불리한 결정을 검토할 것을 해당 국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 기간은 취하통지일(서식 PCT/RO/117)로부터 2 개월이며,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이 출원 파일에서 관련 문서의 사본을 출원인이 명시한 관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출원인은 각 해당 관청에 대해 국내단계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내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관청은 동 청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건을 검토합니다. 해당 관청은 취하간주 선언이 수리관청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을 취하간주 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해당 관청이 수리관청의 출원 취하간주 결정이 PCT 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해도, 해당 관청은 동 청의 국내법령의 적용에 따라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PCT 제 24 조제 2 항 및 제 27 조제 4 항 참고).

PCT 기간지연의 경우, 이러한 지연들에 대한 책임면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 48 조제 2 항 및 규칙 82 의 2 는, 모든 체약국은 자국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이유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여전히 특허보호 취득을 희망하는 해당 관청이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국내 또는 역내 규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관청은 동 청에 대해 직접 제출된 특허출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조건에 따라 PCT 출원에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예로, 권리회복(reinstatement of rights), 회복(restoration), 절차회복(*restitutio in integrum*), 포기출원의 회복(resumption of abandoned applications), 절차의 속행(continuation of proceedings), 또는 절차의 속행(further processing) (예: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 121 조)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책들은 또한 PCT 출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48 조제 2 항(b)는 PCT 가 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정관청이 적용하는 구체적 절차들에 있어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guide/>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내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CT 제 25 조 또는 제 48 조에 대한 국내 또는 지역 판례법에 대한 사항은 WIPO PCT 판례법 데이터베이스(WIPO PCT Case Law Database, <https://www.wipo.int/pctcaselawdb/en/list.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CT 체약국에 소재하고 PCT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결이나 심결 중, PCT 규정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을 보여 주며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들은 국제사무국(pct.legal@wipo.int)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LV** 라트비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NO** 노르웨이 (수수료)

**RU**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국제형 조사 관련 규정)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북유럽 특허기구, 스페인 특허상표청,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기관(VPI))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등록청,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 유럽 특허청 - PCT-EPO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 PCT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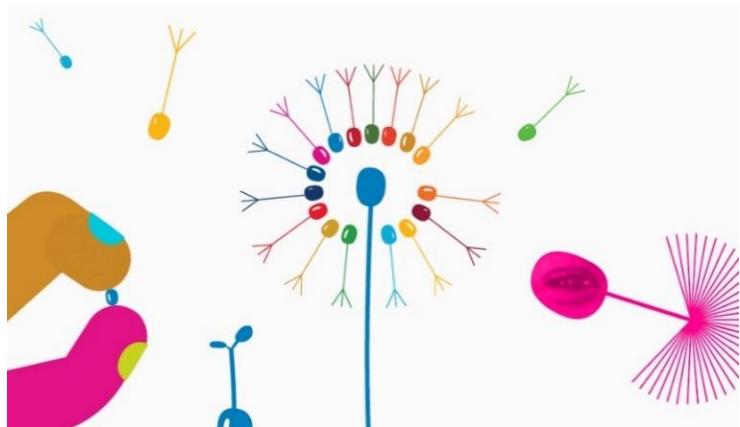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4월 | 2024/04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2024년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지난 PCT 뉴스레터 2024/01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올해도 4월 26일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IP)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혁신과 창의성으로 공동의 미래 만들기”를 테마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식재산(IP)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최하신 세계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래 세계 지식재산의 날 행사 페이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ip-outreach/en/ipday/2024/events-calendar.html>

또한, 아래 세계 지식재산의 날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갤러리에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하거나 동료나 지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n/web/ipday/wipd-2024-gallery>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또한 “대중 선정상”(People's Choice Prize) 수상자 선정을 위한 온라인 대중투표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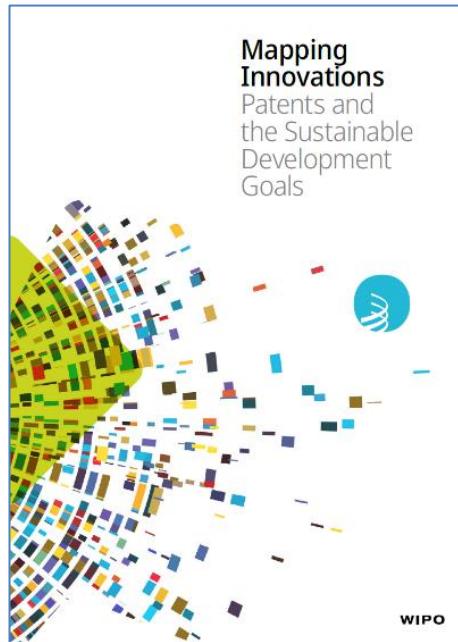
<https://wipo-wipd-2024-video-competition.wipo.int/entry/vote/EoeeKmdd>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PCT 출원의 연대순 변화를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ublic.flourish.studio/visualisation/17033752/>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PCT 공개출원의 몇 가지 대표적 예시 등, PCT 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pct-sdg.html>



### 새로운 WIPO 보고서 “혁신 매핑: 특허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 테마와 더불어, 새로 발간된 WIPO 보고서 “혁신 매핑: 특허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특허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종합 안내서와 같은 이 보고서는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서로 얹혀있는 세상에서 나아갈 길을 조명합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eb/patent-analytics/mapping-innovations-patents-sustainable-development-goals>

## WIPO 표준 ST.26 개정버전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 부속서 C 내 단락 5에 의거하여, 그리고 제 11 차 WIPO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 회의에서 WIPO 표준 ST.26 버전 1.7을 채택함에 따라(문서 CWS/11/3, 및 문서 CWS/11/27 내 단락 49 및 50 참고), WIPO 사무총장은 해당 신규 버전이 2024년 7월 1일 또는 이날 이후에 제출되는 국제출원에 대해 발효함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전에 제출된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 후 제출된 서열목록에는 버전 1.6이나 1.7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무 상으로는, 버전 1.6과 1.7 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편집 관련 사항이므로, 출원인께서는 버전 1.6과 1.7에 모두 부합하는 WIPO Sequence를 계속 사용해 서열목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6-01.pdf>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추가 내용은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에서 PCT/WG/12/20 참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참여의사, 또는 참여범위 변경을 통지한 관청들에 대한 내용을 아래 중 2024년 4월 11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77페이지부터)에 게재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docs/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https://www.wipo.int/pct/en/docs/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 ePCT 업데이트

ePCT 신규 버전이 2024년 4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출원인을 위한 ePCT 와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국제기관을 위한 ePCT의 신규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710>

<https://www.wipo.int/ipportal-support/epct-office-user-guide/faq>

주요 신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을 위한 ePCT의 새로운 기능

-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를 출원인이 직접 수행: 추가 내용은 본 호의 유용한 도움말과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Manage Access Rights following a Rule 92bis change request” (<https://multimedia.wipo.int/wipo/en/pct/suspended-access-rights-2024-02-26-720p.mp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 요건: 대표자(common representative), 대표자로 간주되는 자(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을 할 권리를 가진 제일 먼저 기재된 출원인) 및 선임된 대리인(제 1장)만 ePCT에서 대부분의 출원 후 온라인 액션들에 서명하도록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서명 섹션에서 출원인, 대리인(제 1장), 또는 대표자가 나타나는 “서명인”(signatory) 드롭다운 목록은 계속 표시되지만 서명권한이 있는 당사자만 선택을 위해 활성화됩니다. 서명권한이 없는 당사자도 남아 있지만 이름과 자격(capacity) 옆에 “[서명권한 없음]”(not authorized to sign)이 표시되고 회색으로 처리됩니다.

- 출원인(법인) 또는 대리인(법인)을 대신해 서명할 권한을 확인하는 새로운 체크박스에 체크 필수: 이는 국제사무국(IB)에 제출되는 대부분의 ePCT 출원 후 온라인 액션들과 관련된 달라진 점입니다.

선택된 서명인이 출원인(법인) 또는 대리인(법인)인 경우 서명인 “자격”(capacity) 필드가 출원인(법인)이나 대리인(법인)을 대신해 서명할 권한을 확인하는 상기 체크박스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체크박스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ePCT 출원 시 출원인(법인)이 본인의 서명권한을 확인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리인(법인)에 대해 추가되었습니다.

-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RO/US)에 출원 - 대리인은 반드시 자연인: 선택된 수리관청이 RO/US 인 경우 추가되는 대리인은 모두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 옵션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 업무 연속성 서비스(Business Continuity Service)로 출원 - 출원 전 수리관청을 RO/IB로 변경: 업무 연속성 서비스로 출원 준비 시, 다른 수리관청이 이전에 선택된 경우 선택된 수리관청을 RO/I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에서 변환하여 보게 될 형태로 문서 보기”(View document as it will be rendered at the IB) 기능이 의미가 더욱 명확하도록 “제출 후의 문서 변환 형태 미리보기”(Preview rendering of document after submission)로 이름 변경 - 해당 버튼/링크 작동 방식은 변동 없습니다.

### 관청을 위한 ePCT의 새로운 기능

이번 ePCT 버전에서 다음의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 수리관청(RO):
  - 국제출원 문서(IA Documents) 섹션으로부터 서식 PCT/RO/123 및 PCT/RO/136에 문서 첨부 가능
  - 서식 PCT/RO/158 및 PCT/RO/159 생성용 새로운 ePCT 액션들
- 국제조사기관(ISA):
  - 서식 PCT/ISA/237에 인용자료 불러오기(import)
  - 서식 PCT/ISA/212 초안 저장하기
  - 새로운 작업(task) “국제조사 착수”(Start international search)
  - 서식 PCT/ISA/237에 E 및 P 카테고리 특허문헌 자동 추가
  - 서식 PCT/ISA/237 내 제 5 기재란에 “없음”(NONE) 체크박스 추가
  - 서식 PCT/ISA/210의 IPC 형식이 서식 PCT/ISA/237과 통일
-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서식 PCT/ISA/237, PCT/IPEA/408 및 PCT/IPEA/409에 청구범위의 텍스트를 불러오는 신규 기능
  - 단순 자유텍스트(free-text) 필드가 내장 텍스트 편집기(embedded text editor)로 업그레이드
  - 새로운 단일성(Unity) 문구들 추가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ePCT Office User Guide and FAQs” 페이지의 “What’s New?”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ipportal-support/epct-office-user-guide/faq?selected=0>

지금까지와 같이 각 관청께서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PCT 국제협력국(PCT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pcticd@wipo.int)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ePCT 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앞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UG=4&T=en&N=769>

## ePCT 일시적 사용 불가능

PCT 규칙 82의 4.2(a)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아래의 기간 동안 ePCT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했음을 PCT 사용자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3월 28일 오후 2:50부터 오후 4:40 까지(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이로 인해 PCT 규칙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께서는 PCT 규칙 82의 4.2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2023년 11월 16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 217 페이지 이하 참고)에 게재된 국제사무국의 통지사항에 안내된 적용 가능한 조건들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 새로 발견된 납부 요청서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PCT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수수료 납부 요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그간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공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EPTP – European Patent & Trademark Protection”에서도 납부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가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들이 WIPO에 제보한 여러 다른 예시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추가 전반적인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https://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CT 제 21조 제 2항(a)).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제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본인의 조직 내 수수료 납부 처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그러한 납부 요청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께서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상기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단체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 PCT 출원인 가이드 내용 추가

### PCT 회람 C. PCT

1659(<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circulars/2023/1659.pdf>)를 통한 관청들과의 협의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인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폭넓게 만들고자 해당 회람에 인용된 새로운 질문들을 PCT 출원인 가이드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제사무국은 현재 해당 질문들에 대한 체약국 관청들의 답변을 취합하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PCT 출원인 가이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관청에서 답변이 제공되어 게재되었습니다.

특정 국가나 관청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 유용한 도움말

### 대리인 변경에 따른 ePCT 내 접근권한 관리

Q: 국제출원 대리업무를 인계받게 되어 ePCT로 출원인의 위임장과 함께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동사항 기록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ePCT에서 접근권한 처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대리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ePCT에서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 이상적으로, ePCT에서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출원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제출 전에 ePCT에서 “eOwner”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해당 접근권한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ePCT에서 eOwner 접근권한을 가진 떠나는 대리인이 신임 대리인에게 ePCT 내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임 대리인은 강력인증이 설정된 WIPO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임 대리인과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ePCT에서 새로운 온라인 접근권한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액션”으로 변경 청구서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27>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전 대리인이 질문자께 ePCT에서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당 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ePCT에서 일반적인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대리인 변경 청구 서한을 제출하셔야 하고, 이때 본인이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새로운 서류참조기호(file reference, 해당 시), 제일 먼저 기재된 출원인이나 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추가 내용은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에서 “Upload Documents” 확인). 출원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ePCT 액션을 통해 파일 기록상 현재 대리인(agent of record)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방법은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54>에서 확인).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가 대리인 변경을 위해 업로드 기능이나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액션을 통해 국제사무국(IB)에 제출되면 해당 출원에 대한 ePCT 온라인 접근이 곧바로 자동 중단됩니다. 과거에는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에 따른 사용자 접근권한을 국제사무국이 관리했으나 지금은 국제사무국의 개입 없이 출원인이 접근권한을 삭제하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이 변경 청구서를 처리하면, 변경 청구서에 신임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경우 “Confirm ePCT access rights”라는 제목의 새로운 알림 이메일이 신임 대리인에게 전송됩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eOwner, eEditor 또는 eViewer로서의 기존의 접근권한이 모두 나와 있고, 신임 대리인으로서 이들 권리를 확인하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외부 페이지의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Confirm ePCT access rights”라는 제목의 해당 외부 페이지에는 현재 접근권한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표시되고 “Access rights” 버튼에서 아래의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Remove all access rights”는 ePCT 내 현재의 접근권한을 모두 삭제하여 ePCT에서 (이 경우 질문자께서) 해당 출원에 대해 새로운 접근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Keep current access rights”는 열거된 개인들의 접근권한을 재활성화합니다.

“I confirm the decision regarding access rights”를 클릭하여 본인의 결정을 확인하면 ePCT 내 접근이 곧바로 업데이트되어 해당 출원에 대한 ePCT에서의 접근이 복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동영상 튜토리얼 “Manage access rights following a Rule 92bis change request”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ultimedia.wipo.int/wipo/en/pct/suspended-access-rights-2024-02-26-720p.mp4>

보안상 이유로 ePCT 접근권한 확인 링크는 7일 후에 만료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만료 통지 이메일에서 “Resend new link”를 클릭하여 새로운 링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ePCT에서의 접근은 신임 대리인이 ePCT에서 기존의 접근권한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추가 내용은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25> 참고).

신임 대리인으로서 서식 PCT/IB/306(기록변경 통지서)을 수신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기존의 접근권한들을 삭제하셨으면, 본인의 접근권한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637>

또한 동영상 튜토리얼 “Request Access Rights after Filing”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ultimedia.wipo.int/wipo/en/pct/request-access-rights-after-filing-2023-01-23-720p.mp4>

국제사무국이 기록한 신임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가 접근권한 요청에 사용될 질문자의 WIPO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면, 질문자의 접근권한 요청은 ePCT에서 자동 승인됩니다.

해당 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면 PCT 서식/IB/301에 나온 코드가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 요청 과정의 일부로 필요합니다. 해당 서식에 접근하실 수 없으면 아래에서 “I'm the new agent and I don't have access to the IB/301 code to request access rights before publication”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38>

항상 출원 당 두 명의 eOwner를 지정해야 접근권한 관리가 보다 수월합니다.

ePCT 내 접근권한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3>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4>

또한 아래에서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access\\_rights.html](https://www.wipo.int/pct/en/epct/access_rights.html)

PCT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제출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12/02호 및 2012/03호의 유용한 도움말과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편 내 단락 11.018 내지 1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24년 5월 9일 공개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미국: EFS-Web 사용 종료

### 이례적 휴무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PCT 정보 업데이트

FI 핀란드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IN 인도 (수수료 감면)

조사료 (이집트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러시아어 웨비나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5월 | 2024/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 확대

지난 PCT 뉴스레터 2023/10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다 잘 표시하고 XML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용지 하단 여백의 날인 대신 오른쪽 여백에 검은색 줄과 관련 규칙 및 날짜가 표시됩니다. 수정부분 렌더링으로 인해 처음에 XML 형식으로 제출된 출원과 페이지 번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출원 시 XML에서 생성된 원래 페이지들이 PDF 문서로 제공되는 대체용지와 합쳐질 때 레이아웃의 일관성이 향상됩니다.

해당 시범시행은 2023년 10월부터 중국의 수리관청(RO/CN)에 XML 형식으로 제출되거나 XML 형식으로 변환된 국제출원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시행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관련 관청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제사무국은 2024년 6월부터 일본의 수리관청(RO/JP)과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RO/IB)에 XML 형식으로 제출된 국제출원들로 시범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시행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circulars/2023/1656.pdf>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4년 7월 1일부로,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Fee Tables)에 나온 것과 같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http://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HN, IB, IL, IN, IQ, JM,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A,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년 7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	USD	110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	USD	55
항공우편 추가요금: .....	USD	1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2024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Making Innovation Policy Work for Development”(혁신정책에 따른 발전)는 인류의 혁신, 경제 다각화 및 산업 정책의 교집합을 통해 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가 지역혁신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입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고서는 여러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고 성장하는 경제구조 기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과 창의성,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산업정책 입안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보고서와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web/world-ip-report>

## 유용한 도움말

### 제 3자 의견서(third-party observation) 및 그 효과

Q: 저는 긍정적인 국제조사 결과를 받았고 제 PCT 출원도 공개되었는데, 이제 와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제 3자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해당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까요?

A: 제 3자 의견서는 다른 출원인, 경쟁자 또는 공중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청구된 발명이 새롭지 않거나(신규성 결여) 자명하다(진보성 결여)고 판단한 PCT 공개출원에 대해 제시한 의견(observations 또는 comments)을 의미합니다.

국제출원 공개 후 제 3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28개월까지 ePCT 시스템을 통해 국제사무국(IB)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각 제 3자는 특정 출원에 대해 1개의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건의 출원에 대해서는 10개의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각 의견서에는 국제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 또는 우선일이 국제출원일 전인 특허문헌을 인용하는 인용문헌이 적어도 1개, 최대 10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용문헌은 각 문헌이 청구 발명의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수반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가급적 각 인용문헌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자는 선택에 의해 익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 3자 의견서 서비스는 강력인증 없이 ePCT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PATENTSCOPE(<https://www.wipo.int/patentscope/en/>)에서 공개된 국제출원을 둘러보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법적 근거는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 제 8 부(Part 8)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형식과 의견서의 길이, 언어 등에 대한 해당 서비스 관련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 사용자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epct/docs/epct\\_observations.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epct/docs/epct_observations.pdf)

국제사무국은 각 의견서를 확인하는데, 이는 단지 해당 의견서가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의 문제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서의 실체적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견서가 발명의 소유권(ownership),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개시 요건(sufficiency of disclosure)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의견서를 거절하고 제 3자에게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수락되면 PATENTSCOPE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같은 섹션에 공개됩니다. 이 때, 해당 의견서만 공중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유로, 해당 의견서와 함께 업로드된 선행기술 문헌은 출원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해당 시), 그리고 지정 또는 선택관청에만 제공됩니다.

국제사무국은 이와 같은 의견서의 제출을 출원인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하고, 업로드 된 선행기술 문헌의 사본을 출원인과 지정관청 양측 모두에게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의견서와 인용문헌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ISA)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도 고려를 위해 송부하는데, 이는 해당 출원이 동 기관에 계류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국제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제조사기관에 제 3자 의견서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조사 결과는 재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II 장 청구서(Chapter II Demand)<sup>1</sup>를 제출하시면 국제사무국에서 의견서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공하는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아직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견서를 고려 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일부터 30개월이 만료할 때까지 국제단계 동안에 해당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하며, ePCT에 강력인증으로 로그인 후 PDF 문서 유형 “제삼자 의견서에 대한 출원인 의견서”(Applicant Comments on Third Party Observation)를 업로드하시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의견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해당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PATENTSCOPE에서 공중에 공개됩니다. 제 3자가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개월의 답변 기간은 질문자께서 국내단계 진입 전에 그에 대응하고 해당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아래 설명과 같이 국내단계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sup>1</sup> (역주)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 II 장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사무국은 해당 우선일부터 30 개월이 만료된 후 즉시 의견서와 선행기술 문헌을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미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인들은 본인이 알게 된 관련 문헌을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공개진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관청에서는 국내단계 처리를 위해 해당 문헌을 고려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로, 질문자께서는 비슷한 제 3 자 의견서 제도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내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내단계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자 의견서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https://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

또한, 아래 PCT 뉴스레터 2012/07-08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82012.html](https://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82012.html)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홍수의 영향을 받은 출원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구제책**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의 4.2)**

**PCT 규칙 82의 4.2에 따른 통지(유럽 특허청)**

**이례적 휴무일**

**인도 특허청 (첸나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PCT 정보 업데이트**

**EP 유럽특허기구 (팩스 사용 종료)**

**ES 스페인 (위치 및 우편주소)**

**PT 포르투갈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US 미국 (위치 및 우편주소, 수수료,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조사료 (여러 관청)**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중국어 자료**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6월 | 2024/06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새로운 WIPO 조약: PCT 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WIPO 조약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WIPO 회원국들은 지난 2024년 5월 24일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동 조약은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간의 접점을 다루는 최초의 WIPO 조약이자, 특히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WIPO 조약입니다.

15개 체약국의 조약 가입 또는 비준 후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의 특허출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개요건이 국제법에 수립됩니다. 즉,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이 유전자원에 기반한 경우, 각 체약국은 출원인에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국이나 출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반한 경우, 각 체약국은 출원인에게 해당 시 해당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PCT에 미치는 영향

이 새로운 조약 제 7 조의 각주 4 번에 나온 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체약국들은, 적용 가능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공개를 요구하는 PCT 체약국을 지정하는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해당 국제출원 시, 모든 그와 같은 체약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또는 그 후 모든 그와 같은 체약국의 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 시, 그와 같은 공개요건과 관련된 방식요건을 모두 준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CT 규칙 및/또는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국제특허협력동맹 총회(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Patent Cooperation Union)에 요청한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국제사무국은 동 조약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추적관찰하고, 적절한 때에, PCT 체약국이 상기 각주에 나온 것과 같은 동 조약의 의무를 PCT 내에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국제사무국은 PCT 체약국과 PCT 사용자들의 추가 내용에 대한 문의나 요청에 언제든지 응대할 것입니다.

## PCT 규칙 개정사항 - 2024년 7월 1일 발효(재공지)

2023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PCT 동맹총회(PCT 총회) 회의에서, 2024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사항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규칙 26 및 29 개정: 국제출원에 서로 다른 언어로 기재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언어들이 모두 관할 수리관청에서 인정하는 언어인 경우의 절차와 관련한 개정
- 규칙 82의 4.3(c)의 프랑스어 텍스트 개정: 동 규칙의 영어 및 프랑스어 텍스트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개정

PCT 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_changes\\_archive.html](https://www.wipo.int/pct/en/texts/rule_changes_archive.html)

##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2024년 7월 1일자로 개신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이 함께 담긴 출판물(WIPO Publication 274)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책자를 아래에서 PDF 형식으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739>

특허협력조약 및 PCT 규칙 각각의 PDF 버전은 위 9개 언어들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영어와 이탈리아어 외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PCT 통계자료

### 2024년 PCT 연례보고서

2024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23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3년 PCT 출원 및 국제특허제도인 PCT의 운영실적(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및 여성 발명자들의 PCT 출원 참여에 관한 통계 포함)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와 2022년(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년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특별 주제에 대한 내용과 PCT의 이점에 대한 요약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PCT 연례보고서는 특별 주제로 “PCT 출원의 기술적 구성”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술적으로 분석합니다. PCT 시스템 사용은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되었으며 PCT 출원의 기술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일차적으로 특정 기술분야에서 다른 기술분야보다 특허 작성 및 심사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PCT 출원의 기술적 구성 변화는 혁신 방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는데, 주로 최근 생겨난 기술적 기회들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개별 국가들 수준에서도 일어나, 일부 국가는 자국의 기술 특화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세계적 동향에 더욱 밀착해 있습니다.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740&plang=EN>

<https://www.wipo.int/pct/en/activity/index.html>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개 언어로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공개 일정 변동사항

### 2024년 8월 1일 공개

2024년 8월 1일 목요일이 WIPO 휴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식 공지(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은 다음날인 2024년 8월 2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서머타임(CEST))까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PCT 뉴스레터 7-8 월 통합호

PCT 뉴스레터 다음 호는 7-8 월 통합호로, 영문판이 8월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6월호와 7-8월 통합호 사이에 PCT 사용자께서 아셔야 할 중요한 PCT 관련 소식이 생기면 PCT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와 PCT 메인페이지의 뉴스(News) 섹션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서비스는 매월 PCT 뉴스레터가 발행될 때 이를 PCT 사용자들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그때그때 중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셨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newsletters/ko/index.html>

7-8월 통합호 발행 전에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이나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내용은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seminar-calendar.pdf>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fees.pdf>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오스트리아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일본 특허청)

2024년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EUR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 I(b)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CHF, KRW, SGD, USD 및 ZAR 등가액도 곧 책정). 또한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추가조사료: EUR 1,845

또한, 2024년 8월 1일부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JPY로 납부되는 등가액과 일본 특허청이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EUR 및 SGD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각각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JP 및 SG) 업데이트)

## PCT 시행세칙 개정

2024년 7월 1일부로 PCT 시행세칙(행정지침) 내 섹션 305의 2, 308, 707 및 804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포함된 개정된 시행세칙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PDF 형식으로 아래 각 페이지 오른쪽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zh/texts/index.html>

<https://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https://www.wipo.int/pct/fr/texts/index.html>

<https://www.wipo.int/pct/ru/texts/index.html>

<https://www.wipo.int/pct/es/texts/index.html>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은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도 아래 페이지에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www.wipo.int/pct/ja/texts/index.html>

상기 변동사항은 아래 회람(Circular C. PCT 1668)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circulars/>

##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이 2024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회람(Circular C. PCT 1674)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circulars/>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규칙 개정(2024년 7월)

202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새로운 PCT 규칙 통합본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앞에 나온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PPT 자료

“PCT 규칙 개정사항” 단락에 나온 것과 같이, 202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_changes\\_archive.html](https://www.wipo.int/pct/en/texts/rule_changes_archive.html)

## 유용한 도움말

### 발명자의 이름 기재

Q: 저는 유럽 특허 대리인입니다. 제 고객이 유럽 특허출원을 했는데, 고객이 해당 출원에 발명자로서 언급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PCT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PCT 출원에서도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되 비밀로 하는 것이 똑같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 4 조의 3에서 특허문헌에 발명자가 알려질 권리가 보장하고 있고, 여러 국내 또는 지역 특허제도에서 출원 시 발명자의 이름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 발명자가 본인의 이름이 비밀로 남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질문자의 고객이 본인이 언급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즉 본인의 이름을 출원에는 기재하되 충족해야 할 다른 어떤 추가 조건 없이 이름이 비밀로 남을 것을 단순히 요청할 수 있었던 유럽특허제도(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시행규칙 규칙 20.1)와 달리, PCT 시스템에는 발명자가 본인의 이름을 공중이 열람할 수 없게 할 것을 요청하는 유사한 수단이 없습니다.

PCT 시스템에서 발명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출원에서 발명자의 이름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락 시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 시 각 지정관청에 발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약국들이 발명자의 이름을 출원 시 제공할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지정관청은 적어도 국내단계 진입 시 발명자의 이름이 제공될 것을 요구합니다(추가 내용은 PCT 규칙 4.1(a)(iv), 4.1(c) 및 4.6 참조).

따라서, 국내단계에서 문제나 지연을 예방하려면 해당 정보를 국제단계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적용 가능한 국내의 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에서 여하튼 간에 국내단계 동안 발명자의 이름을 요구하고 공개합니다.

발명자에 관한 표시를 기재하거나 PCT 규칙 92의 2에 따라 시간 내에 추가 제공하면(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의 완료 전), 이는 PCT 규칙 48.2(b)(i) 및 PCT

시행 세칙(행정지침) 섹션 406(c) 및 부속서(Annex) D 의 4 번 항목(item)에 따라 국제공개에 반영됩니다. 발명자 정보가 PCT 규칙 92 의 2 에 따라 나중에 추가되면(공개 후지만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 PATENTSCOPE 의 서지정보 템이 이에 따라 업데이트되어 해당 정보를 규칙 94 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보관하는 출원파일의 일부로서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발명자 이름 비공개 요청문은 PCT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 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현행 절차상 발명자의 우편주소 및 이메일주소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정도는 고려되고 있습니다. PATENTSCOPE 의 “PCT 서지정보”(PCT Biblio. Data) 템에 나타나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에서 해당 주소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이와 달리 공개출원은 이미지 형식으로만 열람이 가능). 이에 따라, 해당 주소들은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또한, PCT 는 출원서에 발명자에 대해 기재된 주소가 발명자의 “자택” 주소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PCT 규칙 4.4(c)). 그 대신 고용인(employer)의 주소를 발명자의 주소로 기재해도 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PCT 체약국은 특허출원 프로세스상 발명자가 기재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의 이름을 제공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 제출과 관련한 각 지정관청의 요건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양방향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 EPO)

### **PCT 정보 업데이트**

**BR 브라질 (위치 및 우편주소, 국제출원 사본 수)**

**CA 캐나다 (수수료)**

**QA 카타르 (이메일 주소)**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중국어로 제공되는 PCT 자료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 **WIPO 웨비나 – IP 와 여성:특허, 특허협력조약(PCT)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7-8월 | 2024/07-08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PCT 동맹총회

제 56 차 PCT 동맹총회(PCT 총회)가 WIPO 회원국 총회의 일환으로 2024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회의 요약내용에 나온 자료들을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T 총회 자료(보고서 준비 시 업로드):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1262](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1262)

PCT 실무그룹 17 차 회의 자료: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0912)

이번 PCT 총회에서 문서 PCT/A/56/2의 부속서들에 기재된 바와 같은 PCT 규칙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CT 규칙 26:** 출원인이 요약서 및 도면의 텍스트를 해당 국제출원이 공개될 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수리관청의 요건의 예외 범위 축소. 요약서 및 도면의 텍스트가 국제출원과 다른 언어로, 그러나 국제조사기관(ISA)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경우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이 하나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해당 요약서와 도면의 텍스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문서 PCT/WG/17/7, 그리고 문서 PCT/WG/17/21 내 단락 23 및 24 및 부속서 I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일 발효되며, 국제출원일이 이날 또는 이날 이후인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 PCT 규칙 33 및 64: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관련 선행기술의 정의를 비서면개시를 포함하도록 확대. 추가 내용은 문서 PCT/WG/17/10, 그리고 문서 PCT/WG/17/21 내 단락 25 및 26 및 부속서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사항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 시 찾아봐야 하는 최소문헌의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PCT 뉴스레터 2023/07-08 호 참고)과 함께 2026년 1월 1일 발효되며, 이날 또는 이날 이후에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제 17 조제 2 항(a)에 따른 선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 PCT 규칙 89의 2: 국제사무국 이외의 관청이, 국제출원과 후속제출서류를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문서를 2개월 내에 전자적 형태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 추가 내용은 문서 PCT/WG/17/15, 그리고 문서 PCT/WG/17/21 내 단락 15 및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일 발효됩니다.
- PCT 규칙 92: 국제사무국이 특정 통신문에 대해 출원인 또는 관청들과 영어나 프랑스어만이 아니라 국제공개어 10개 중 어느 언어로든 통신하도록 허용. 국제사무국이 영어나 프랑스어 외 다른 언어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문은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내용은 문서 PCT/WG/17/6, 그리고 문서 PCT/WG/17/21 내 단락 21 및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일 발효됩니다.

또한 총회에서는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항목(item) 5에 규정된, 국민 또는 거주자가 PCT 수수료 감면 자격을 갖는 국가들의 목록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기준을 유지하되 수수료표에서 요구하는 대로 5년 뒤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는 연중 구체적 시기 대신에 WIPO 회원국 총회 연례회의를 인용하도록 “특정 PCT 수수료 감면 기준 충족 국가들 목록 갱신 지침(Directives for Updating the Lists of States Meeting the Criteria for Reduction of Certain PCT Fees)”에 대한 개정사항을 채택했습니다(문서 PCT/A/56/1 참고).

## ePCT 업데이트

ePCT 시스템 신규 버전이 2024년 7월 22일 출시되었습니다. 출원인, 그리고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국제기관을 위한 신규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724>

<https://www.wipo.int/ipportal-support/epct-office-user-guide/faq?selected=0>

주요 신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을 위한 ePCT의 새로운 기능

규칙 92의 2 변경 요청을 위한 온라인 액션의 새로운 기능:

- 대리인 세부사항: 수리관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새로운 체크박스

- 변경사항이 이름의 변경인지 사람의 변경인지 명시하는 새로운 드롭다운 메뉴

## 관청을 위한 ePCT의 새로운 기능

이번 ePCT 버전에는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 수리관청(RO):

- 서식 PCT/RO/105 개선
-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신규 서식 PCT/RO/145
- 신규 서식 PCT/RO/145 와의 통일성을 위해 서식 PCT/RO/117, PCT/RO/150 및 PCT/RO/157 개정

- 국제조사기관(ISA):

- IPC 코드 업로드 개선
- “국제조사 착수(Start international search)” 작업 개선
- 서식 PCT/ISA/237 제 6 기재란에서 E 및 P 카테고리 특허문헌 자동 삭제

-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단일성 조항들 번역

지금까지와 같이 각 관청께서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PCT 국제협력국(PCT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pcticd@wipo.int](mailto:pcticd@wipo.int))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ePCT 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앞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UG=4&T=en&N=769>

## 2024년 7월 19일 발생한 IT 대란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을 위한 PCT 지침

PCT 규칙은 PCT 규칙 82의 4.1에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작된 전 세계적 IT 대란에 적용 가능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란으로 인해 PCT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PCT 출원인께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청 및 기관에서도 해당 해석을 채택하기를 촉구합니다.

규칙 82의 4.1은 “전자적 통신의 광범위한 장애,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를 포함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이유로 (문서 제출 및/또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될 수 있는) PCT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2024년 7월 19일 시작된 해당 대란을 이유로 PCT 규칙 82의 4.1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을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고, 규칙 82의 4.1(d)에 따라 증거제출을 면제할 것입니다. 국제사무국은 PCT 관청 및 기관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번 IT 대란과 그 여파로 인해 우선권 기간 내에는 PCT 출원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 12개월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원을 제출할 수 있었던 출원인께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수리관청에 PCT 규칙 26의 2.3에 따라 우선권 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sup>1</sup> 특히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해당 규칙과 그에 따른 모든 적용 가능 기준을 적용합니다.

## PCT 시행세칙 개정

개정된 PCT 시행세칙(행정지침)이 202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로, PDF 형식으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zh/texts/index.html>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텍스트는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PCT 공개 일정 변경사항

### 2024년 9월 5일자 공개

2024년 9월 5일 목요일이 WIPO 휴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식 공지(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24년 9월 6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자정(CES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취급료 (일본 특허청)

2024년 9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일본 특허청에 JPY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JPY 35,700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JP) 업데이트)

###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오스트리아 특허청, 일본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2024년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CHF, KRW, SGD, USD 및 ZAR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일본 특허청 .....CHF

<sup>1</sup> (역주)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수리관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CHF, EUR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BR 및 JP) 업데이트)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추가 내용은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에서 PCT/WG/12/20 참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참여의사, 또는 참여범위 변경을 통지한 관청들에 관한 내용을 아래 중 2024년 7월 11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115페이지부터)에게 재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아래 페이지에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tutorials.html>

위 페이지에 DOCX 형식의 ePCT 출원과 최신 ePCT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목차에서 아래의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PCT-filing in DOCX format (DOCX 형식의 ePCT 출원):
  - Filing in DOCX format (DOCX 형식으로 출원하기)
  - How to upload a DOCX specification in ePCT-filing in a non-publication language (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DOCX 형식의 명세서를 ePCT에 업로드하는 방법)
  - How to use the application body converter to check your DOCX specification (출원 본문 변환기로 내 DOCX 명세서 확인하는 방법)

상기 동영상들은 DOCX 형식으로 PCT 출원을 제출하고 가능한 경우 CHF 30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시연을 제공합니다.

- What's new in ePCT (ePCT 최신정보):
  - 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 (출원인을 위한 ePCT의 새로운 기능)

상기 동영상은 국제출원 제출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자 설계된 ePCT의 최신 기능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2023년 10월 2-3일 양일간 제네바에 소재한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WIPO 특허 및 기술부(Patents and Technology Sector) 소속 경험 많은 직원들과, 그 외 미국 특허상표청의 연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및 기타 PCT 제도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날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둘째 날은 법률 및 처리상 이슈들에 대한 체험 워크숍, ePCT 클리닉, 그리고 PCT 운영팀(PCT Operations Teams) 방문 프로그램이 현장 참석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및 추가정보를 위한 링크는 조만간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에 게재된 아래의 기사에 대한 링크가 PCT 웹사이트 내 "PCT 특별기사"(PCT in the Media)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news/pct-media.html>

### 무트랄(Mootral): 한 번에 소 한 마리씩, 기후위기 해결하기

무트랄은,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소 같은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배출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천연 사료 보충제를 생산합니다. 해당 보충제는 스위스 농업기술(애그리테크(AgriTech)) 스타트업인 무트랄의 광범위한 연구와 개발로 탄생했습니다.

무트랄은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자사의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기사는 “특허받은 혁신은 매력적인 사업이고 특허가 있으면 기업은 자사의 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제공하는 20년간의 독점권으로 무트랄 같은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플랫폼 기술들을 더욱 강화할 새로운 특허가능한 창조물들을 개발할 기회를 얻습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ip-at-work/2021/mootral.html](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ip-at-work/2021/mootral.html)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

## 유용한 도움말

### 복수의 언어가 혼용된 국제출원

**Q:** 수리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EPO)에 독일어로 PCT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발명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제 출원 초안에는 여러 전문용어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분야에서 보통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에, 문제의 전문용어들은 번역이 힘들고 그러한 핵심 단어들을 번역하면 어색해 보이고, 또한 부정확하고 간결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 사용이 PCT 절차에서 문제가 될까요?

**A:** 일반적으로 PCT에서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수리관청이 허용하는 한 가지 언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출원의 이런 부분들이 수리관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언어로 작성된 경우 동 청은 해당 출원을 PCT 규칙 19.4에 따라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고 두 언어 모두 (질문자의 경우처럼)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경우, 전문용어를 영어로 기재한 것이 출원에서 흠결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수리관청의 몫입니다.

최근까지,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복수의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의 취급에 관한 PCT 규칙 내 구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 발효된 새로운 PCT 규칙 26.3의 3(e)가 그러한 상황을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리관청에 제공합니다. 동 규칙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가 복수의 언어로 작성되어 이들이 모두 해당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들인 경우, 해당 관청에서 전체 출원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도록 출원인에게 번역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출원 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사용된 언어 중 하나면서,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ISA)에서 허용하는 언어이고, 또한 공개언어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기 위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기 전에 수리관청은 번역문 요청이 특정한 경우에 적절할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용어를 영어로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 기술분야에서 보통 영어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PCT 출원에서 출원의 주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출원 언어와 다른 언어로 기재된 전문용어가 출원에 포함된 경우, 이는 해당 공개출원의 이해를 돋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언어중립적 용어(컴퓨터 코딩 언어 등), 과학출판물 인용, 또는 번역기술 관련 발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복수의 언어로 된 단어들이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번역기술 분야 출원의 도면은 허용되어야 하고, 수리관청은 보통 출원인에게 문제의 용어들을 번역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내 단락 65B 참고).

하지만, 수리관청이 발명의 설명 및/또는 청구범위 내 부분들에 대한 (질문자의 국제출원 나머지 부분들과의 통일성을 위한) 독일어 번역문이 출원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동 청이 해당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출원일 부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원 전에 해당 부분들을 번역하여 추가 행정절차와 지연 및 변리사 비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리관청은 필수 번역문을 모두 수리하기 전에는 국제조사기관에 조사용 사본(search copy)을 송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리관청이 발명의 설명 및/또는 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한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는, 국제조사 목적으로 전체 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서 또는 도면의 텍스트의 경우, 출원 언어로만 작성되어 있지 않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이는 PCT 규칙 26.3의 3(a)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수리관청에서 보정될 수 있는 방식상 흡결로 취급될 것입니다.

국제조사기관의 실체심사관들과 달리 수리관청의 방식심사관들은 보통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제출원의 해당 기술분야에서 출원 내 용어들이 번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에서는 새로운 PCT 규칙 26.3의 3(e)에 따라 얼마간의 유연성을 갖고 특정 용어에 대한 번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번역문 제출 요구를 받으셨는데 문제의 용어들이 앞서 언급된 이유들로 번역될 수 없거나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수리관청에 연락해 사안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국가경쟁방어 및 지식재산보호기관(페루)

### 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유럽 특허청의 특정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특정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캐나다 지식재산청

###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신규 협정

오스트리아 특허청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 참여

새로운 PCT-PPH 시범사업 (중국과 ARIPO, 중국과 바레인)

기존 PPH 및 PCT-PPH 시범사업 연장 (중국과 이집트, 중국과 아이슬란드)

### PCT 정보 업데이트

CL 칠레 (전화번호)

CY 키프로스 (국제출원 제출을 위해 허용되는 언어, 종이사본 수)

GB 영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요건)

GR 그리스 (통신수단, 임시보호, 대리인 관련 요건, 위임장 관련 사항)

HR 크로아티아 (팩스번호)

**JP 일본 (수수료)**

**LU 룩셈부르크 (이메일 주소, 수수료, 국내단계 진입에 대한 특별요건)**

**SA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번호)**

**UG 우간다 (국가안보 규정)**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9월 | 2024/09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XML 형식으로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 확대**

지난 PCT 뉴스레터 2023/10 호와 2024/05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다 잘 표시하고 XML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이고 통일성있게 활용하기 위해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관련 관청들과의 논의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4년 10월부터, 수리관청과 관계없이 XML 형식으로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시행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circulars/2023/1656.pdf>

## **2024년 8월 19일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 장애**

아래 시간 동안 ePCT나 ePCT 업무 연속성 서비스를 통한 국제출원이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2:00 a.m.부터 11:14 a.m.까지(중앙유럽 서머타임(CEST))

그 결과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과 ePCT로 직접 출원을 수리하는 다른 수리관청들에의 출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12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는 출원을 하지 못했지만 해당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출원이 가능한 PCT 출원인들께서는, PCT 규칙 26의 2.3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하는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수리관청에 우선권 회복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sup>1</sup>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동 규칙을 적용합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대한민국 특허청(KIPO) -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요건 및 방법

이미 ePCT를 통한 국제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은, 국제출원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청의 요건과 방식이 담긴 통지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2024년 8월 2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KR) 업데이트)

## PCT 정보 업데이트

### CN 중국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수수료)

국제출원의 양도증에 관한 PCT 규칙 51의 2에 따른 특별요건이 2024년 1월 20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규칙에 따른 특별요건들의 통합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sup>2</sup>.

- 국제출원의 출원서 부분에 발명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 이름<sup>3</sup>
- 출원인들이 다른 경우 우선권 양도증<sup>3</sup>
- 필요시, 변경된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서류
- 대리인 지정
- 출원인이 국제출원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예외에 대한 증거
- 해당 시, 전자적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

또한,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또는 반환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료와 가산출원료 면제.
- 국제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를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발행한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음.

<sup>1</sup> (역주)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수리관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up>2</sup> PCT 제 22조 또는 제 39조제 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한 내에 이미 준수되지 않은 경우 동 관청은 출원인이 요구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sup>3</sup> 동 요건은 PCT 규칙 4.17에 따라 해당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충족될 수 있다.

- 출원이 실체심사단계에 진입했고 최초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기한의 만료 전에(답변이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출원이 자발적으로 취하된 경우 심사료의 50% 반환 요청 가능.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CN)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이집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인도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미국 특허상표청)**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	KRW
유럽 특허청 .....	JPY
일본 특허청 .....	USD
대한민국 특허청 .....	AUD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	USD

2024년 11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 .....	CHF
이집트 특허청 .....	CHF
유럽 특허청 .....	JPY
인도 특허청 .....	CHF, EUR
일본 특허청 .....	USD
미국 특허상표청 .....	ZAR

202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CAD로 납부되는 금액과 CHF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또한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추가조사료: .....	CAD	2,317.68
--------------	-----	----------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T, BR, CA, EG, EP, IN, JP, KR, US)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출원인을 위한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아래의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 모음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ePCT Actions([https://www.wipo.int/pct/en/epct/epct\\_actions.html](https://www.wipo.int/pct/en/epct/epct_actions.html))

- ePCT Action:Update file reference(서류참조기호 갱신)
- ePCT-Action:Rule 92bis change request overview(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개요)
- ePCT-Action:How to use the Rule 92bis change request(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활용 방법)
- ePCT General Features:Download ePCT-Filing data package for RO/US, IL, CA(RO/US, RO/IL, RO/CA용 ePCT 출원 데이터 패키지 다운로드)

##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은행명/주소 변경

은행송금을 통해 WIPO의 은행계좌로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의 이름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온라인 납부 방법과 각 방법별로 허용되는 통화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WIPO에의 PCT 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추가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finance>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예비심사 파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국제예비심사 청구 취하하기

Q: PCT 조약 제 2 장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서 견해서는 발행했는데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이하, IPRP 제 2 장)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답변을 보니, 청구범위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관해 부정적인 진술이 IPRP 제 2 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제예비심사 파일의 내용이 공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습니까?

A: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결론은 IPRP 제 2 장에 기재됩니다. IPRP 제 2 장이 작성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견해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절차와 달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에 답변하고, 해당 실체심사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신하며,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CT 제 33 조 및 제 34 조 및 규칙 66.2 내지 66.6). PCT 제 38 조 제 1 항은 IPRP 제 2 장 작성 전 국제예비심사의 비밀유지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제 2 장 보고서 작성 후 PCT 제 36 조제 1 항 및 PCT 규칙 71.1(a)에 따라 이의 사본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IB) 양측 모두에게 송부하고, 해당 파일 내 일부 문서들의 사본 또한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PCT 규칙 71.1(b) 및 PCT 시행세칙(행정지침) 섹션 602의 2)<sup>4</sup>.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면 국제사무국은 보고서의 사본을 해당 선택관청들에 송부하고(조약 제 36 조제 3 항(a) 및 PCT 규칙 73.2(a)), 이 선택관청들을 대신하여 해당 보고서 및 기타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모든 문서를 PATENTSCOPE에서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PCT 규칙 71.1(b) 및 94.1(c)).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또한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 2 장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선택관청들이 요청 시 제 2 장 파일의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칙 94.2(b)).

본인의 출원에 대해 계류 중인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IPRP II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취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선택관청이 파일을 열람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선택관청들을 대신하여 공중에 공개하지 않고 국제예비심사 파일은 PCT 제 38 조제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제 2 장 보고서 작성 후 국제사무국이 이를 송부받기 전에 청구를 취하하셔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규칙 73.2(c)). 그러나 제 2 장 보고서가 전자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 2 장 보고서의 작성과 국제사무국의 보고서 접수 사이에는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청구 취하 통지서는 서식 PCT/IB/372를 통해 국제사무국 앞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접수일로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업로드 시간이 접수시간으로 기록되는 ePCT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PCT에서 해당 출원에 대해 eOwner 또는 eEditor 접근권한이 있으시면, ePCT 액션 “제 2 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취하”(Withdraw Chapter II Demand)로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방법은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UG=4&T=en&N=866> 참고). 이들 접근권한이 없으시면 ePCT 문서 업로드 기능을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가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취하사실을 통지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취하 통지서를 보내시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처리를 위해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합니다. 이 경우 통지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표시한 날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일 비공개를 위해 청구 취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도를 알리고 취하 통지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되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국제사무국에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까지만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선택관청들은, 보고서가 완성되자마자 국제예비심사 파일 열람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30 개월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즉,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도 제 3 자의 열람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sup>4</sup> 모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단락(a) 및 (b)의 적용을, 동 기관이 이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PCT 시행세칙 섹션 602의 2(c)).

## PCT 뉴스레터 2024/03 호 유용한 도움말 정정사항: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때의 결과 및 국내단계에서의 잠재적 구제절차

지난 PCT 뉴스레터 2024/03 호 유용한 도움말에서 국제단계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내단계에서의 잠재적 구제절차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 부분의 두 번째 문단 첫 줄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수료 납부기한을 놓친 사실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관청의 내부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 아직 수수료 납부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이 회복(reinstate)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모리셔스 산업재산청(IPOM),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산업재산기구(OBI)(그리스),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관련 통지사항 업데이트

###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벨기에 지식재산청(IPObel)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E 벨기에 (관청명)

CA 캐나다 (수수료, 우선권 회복 신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CO 콜롬비아 (위치/우편주소, 전화번호, 수수료, 팩스 이용 중단)

DE 독일 (전화번호)

**GR 그리스 (전자출원)**

**HU 형가리 (국가안보 규정)**

**IN 인도 (우편주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수수료)**

**IT 이탈리아 (위치)**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MU 모리셔스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자출원)**

**NO 노르웨이 (수수료)**

**RU 러시아연방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취급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세미나 개최**

**예정된 PCT 웨비나(일본어)**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에 대해 알아보기(Learn the PCT) 동영상 시리즈: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중국어, 러시아어)**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10월 | 2024/10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우루과이, PCT 가입

### 새로운 PCT 체약국: 우루과이 (국가코드: UY)

우루과이는 2024년 10월 7일 PCT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58 번째 PCT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는 2025년 1월 7일부터 PCT에 기속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7일 또는 이날 이후에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에 우루과이가 지정국으로 자동 포함되어 해외 혁신가와 기업들은 PCT

시스템을 통해 우루과이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기탁한 가입서에는 PCT 제 2장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유보도 포함되어 있어, 2025년 1월 7일 또는 이날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우루과이가 선택국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7일부터 우루과이 국민과 거주자는 PCT 체약국에서의 특허보호 취득 수단으로 PCT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루과이의 PCT 가입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news/2024/news\\_0027.html](https://www.wipo.int/pct/en/news/2024/news_0027.html)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PCT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루과이에 대한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에 게재됩니다.

## 국제기관회의(MIA)

제 31 차 PCT 국제기관회의(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MIA)가 2024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와 작업 문서를 아래 WIPO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4116](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4116)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4년 9월 25일과 26일 온라인 회동 및 2024년 10월 15일 베이징 대면 회동을 통한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 회의 결과. 품질 하위그룹은 구체적 주제들에 대한 대화를 확대하도록 한 해 동안 2개 기관 1조 검토 및 소규모 토론을 통해 품질 관리제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표준 문구들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에 서로 상이한 현행 방법들을 취합하여 WIPO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추가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문서 PCT/MIA/31/11의 부속서 II).
- 2027년 말 이후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연장(문서 PCT/MIA/31/8). 국제기관회의는 제안 일정을 2025년 2월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년 7월 PCT 총회(PCT Assembly)에서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관회의는 상기 문서의 제안을 토대로, PCT 기술협력위원회(PCT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가 연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각 기관이 동 위원회에 제출할 지정 연장 신청서 형식을 PCT 실무그룹에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청이나 기구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해야 하는 합의서(문서 PCT/MIA/31/3). 국제기관회의는 국제사무국이 2028년부터 지정이 연장되는 국제기관들을 위한 모범 합의서 초안을 제출하여 PCT 실무그룹이 2025년 2월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관련 선행기술로 비서면개시(non-written disclosure) 인용(문서 PCT/MIA/31/2). 국제기관들은, 비서면개시가 포함되도록 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기 위해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2026년 1월 1일 발효될 개정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통합 문제(문서 PCT/MIA/31/7). 국제기관들은 대체로, 높은 실행비용 발생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로, 두 양식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견해서 개선하기(문서 PCT/MIA/31/9 및 PCT/MIA/31/10). 기관들은 제 7 기재란(국제출원의 흡결) 및 제 8 기재란(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사용과 제 4 기재란(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유럽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PCT Minimum Documentation Task Force)에 대한 현황보고서(문서 PCT/MIA/31/6). 국제기관회의는, 기술지원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IP 관청들이 WIPO 표준 ST.37에 따라 특허전거파일(patent authority file)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필요시 해당 표준을 개정 및 업데이트 하도록, WIPO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 CWS)에서 전거파일 전담반(Authority File Task Force) 신설을 승인한 바 있음을 언급했습니다(문서 CWS/12/28 내 단락 76 내지 78 참고). 국제기관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최소문헌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시 모든 가능한 WIPO 표준 ST.37 개정사항을 고려하고, 이날 전에 그들의 특허문헌을 다른 기관들이 유효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받았습니다.
- 서열목록 전담반(Sequence Listing Task Force)에 대한 현황보고서(문서 PCT/MIA/31/5). 유럽 특허청은 WIPO 서열 검증기(WIPO Sequence Validator) 버전 3.0.0 이 2024년 10월 3일 출시되었으며 WIPO Sequence 새 버전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PCT 텍스트 처리 전담반(PCT Text Processing Task Force)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문서 PCT/MIA/31/4).

##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개시 예정

지난 2023년 7월 PCT 총회에서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이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지식재산기관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시작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우디 지식재산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PCT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우디 지식재산기관에 대한 기타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및 E에 게재됩니다.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WG/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참여, 또는 서비스 참여범위 변경을 통지한 관청들에 관한 내용을 아래 중 2024년 10월 10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PCT Gazette))(168 페이지부터)에 게재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4년 12월 1일부터,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아래 부속서들에 반영됩니다(<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HN, IB, IL, IN, IQ, JM,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A,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년 12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USD	118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USD	59
항공우편 추가요금:	USD	12

###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B)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필리핀 지식재산청, 일본 특허청(JPO),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CHF, EUR
필리핀 지식재산청	CHF, EUR, USD
일본 특허청(JPO)	EUR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CHF, EUR
미국 특허상표청(USPTO)	CHF, EUR

###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BR, CL, JP, PH 및 US) 업데이트)

## 글로벌 혁신지수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보고서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eb-publications/global-innovation-index-2024/en/index.html>

이번 보고서는 스위스와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편, 중국과 튀르키예, 인도, 베트남, 필리핀<sup>1</sup>이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도 보고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2/92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3.html](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3.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eServices 도움말 페이지의 FAQ

PCT eServices 도움말 페이지에 있던 “eP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가 출원인들을 위해 새로 생긴 “ePCT User Guide FAQs”로 교체되어 아래에서 영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n/web/ipportal-support/epct-user-guide/faq>

ePCT 홈페이지에서 “도움말”(Help)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되며, 사용자들께서는 기존의 즐겨찾기를 새로운 URL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필드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고, 검색결과는 해당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글이 먼저 표시되고 그 아래로 본문에 포함된 글이 표시됩니다.

PCT eServices 헬프데스크 연락처는 전과 동일합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  
전화: (+41-22) 338 9523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의 잘못 제출된 부분 수정하기

Q: PCT 출원을 했는데 실수로 도면들을 최종본이 아닌 초안을 넣었습니다. 우선권 기간은 지난주에 만료되었습니다. PCT 출원의 도면들 버전을 우선권 출원(priority application)의 도면들 버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출원인이 잘못된 요소 또는 부분을 PCT 출원에 실수로 포함시킨 상황에 대해 PCT는 “잘못 제출된 요소 또는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PCT 규칙 20.5의 2)이라는 보호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출원인이 PCT 출원에서 우선권이 주장된 이전 출원의 요소나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동 규칙에서 “요소”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부분”은 이들의 일부, 또는 도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뜻함). 다만, 이런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추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일의 변경 없이 국제출원에서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T 규칙 4.18에 따라 PCT 출원서 제 6 재판에는, 요소 또는 부분이 해당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PCT 규칙

<sup>1</sup> 전체 GII 순위에 따른 순서

20.6에 따른 출원인의 확인을 조건으로 해당 요소 또는 부분이 해당 국제출원에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는 진술이 미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출원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예비 진술이 각 출원에 대해 자동 생성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출원의 도면들을 PCT 출원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해당 도면들이 인용에 의해 보완됨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수리관청에 보내고 보완될 도면들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면들을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으시면 수리관청에서 도면들의 이런 추가 사본을 인용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출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출원일을 이런 올바른 도면을 접수한 날로 변경해 우선권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 기한은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 또는 수리관청이 해당 오류를 통지하고 보정을 요구하는 요구서의 날짜로부터 2개월입니다(PCT 규칙 20.7). 수리관청이 아직 우선권 서류를 이용할 수 없다면, 선출원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 이번에 제출하시는 도면이 선출원의 도면과 동일함을 수리관청이 검증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우선권이 국제출원일에 주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출원 후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여 이를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원 시 출원서에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잊으셨다면, 선출원에 올바른 도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인용에 의한 보완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수리관청은 올바른 도면에 인용에 의해 보완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이를 출원에 추가하는데, 잘못 제출된 도면 앞에 삽입하고 해당 내용을 표시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조사 시작 전 제때에 올바른 도면을 접수한 경우 잘못된 도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잘못 제출된 도면이 PCT 출원에 남아있고 또한 소수의 관청은 PCT 규칙 20.8(b-의 2)에 따라 지정관청으로서 상충사실 통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즉, 국내단계에서 해당 관청들은 해당 도면을 인용에 의해 보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이러한 보호절차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PCT 체약국에 대해 질문자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PCT 출원 요소의 잘못된 버전을 제출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전자출원 과정에서 제출용 파일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파일에 명확히 구분되는 파일명을 붙이고, 올바른 파일이 첨부되고 제출됨을 제출 전과 직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최선의 방법들입니다. 출원 제출 당일에 어떤 실수가 발견되면,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모든 수리관청에 대해 PCT 규칙 20.5의 2(b)에 따라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실수가 발견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상기 절차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받은 서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하신 도면의 사본이 선출원의 도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리관청에서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수리관청은 해당 사본을 접수한 날로 국제출원일을 변경하고(서식 PCT/RO/126 사용), 제출된 페이지들을 무시하고 국제출원일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연장이 불가한 1개월만 기한으로 제공할 것입니다(규칙 20.5의 2(e)).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추가적인 일반적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6.024 내지 6.03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pctip&doc-lang=en&doc-type=guide>

PCT 규칙 20.8(a), (a-의 2), (b) 또는 (b-의 2)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추가 내용, 특히 잘못된 요소가 출원에 포함되어 제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PCT 뉴스레터 2020/07-08 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0/newslett\\_2020.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0/newslett_2020.pdf)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 산업재산국(DIP)(캄보디아)

### PCT 정보 업데이트

AM 아르메니아 (위치 및 우편주소)

HN 온두라스 (위치 및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JP 일본 (국가안보 규정)

RO 루마니아 (수수료)

US 미국 (인터넷 주소,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러시아어 웨비나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세미나 개최(재공지)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러시아어 웨비나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11월 | 2024/11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의 ISA/IPEA 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내용

지난 PCT 뉴스레터 2024/10 호에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두글자 코드: SA)이 2024년 12월 15일부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 같은 날 발효된, ISA 및 IPEA로서의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의 역할 수행에 관한 동 기관과 WIPO 국제사무국(IB) 간 협정문이 아래와 같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docs/agreements/ag-sa.pdf>

<https://www.wipo.int/pct/fr/docs/agreements/ag-sa.pdf>

ISA 및 IPEA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부속서 D 및 E를 포함하는, 2024년 12월 15일부로 발효될 변동사항들이 기재된 “Advance notice” 부분 참고(<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SA&doc-lang=en>))<sup>1</sup>에 나와 있으며,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에 납부하는 수수료들도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와 있습니다.

<sup>1</sup> (역주) 해당 꽂호 안은 영문 뉴스레터 발행 당시 (2024년 12월 15일 이전) 기준의 정보입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 (다수 관청)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 시),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그리고 취급료의 일부 통화의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바대로 변동됩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아래 부속서들에  
반영됩니다(<https://www.wipo.int/pct/en/guide/>).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T, AU, AZ, BA, BG, BH, BW, BY, BZ, CA, CL, CN, CR, CV, CY, CZ, DE, DJ, DK, DO, EA, EC, EE, EG, EP, ES, FI, FR, GB, GE, GH, GR, HN, HR, HU, IB, IE, IL, IN, IQ, IS, IT, JM, JO, JP, KE, KG, KH, KZ, LR, LT, LU, LV, MD, MT, MW, MX, NI, NL, NO, NZ, OM, PA, PE, PG, PH, PT, QA, RO, RS, RU, SA, SC, SE, SG, SI, SK,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A, ZM, ZW
- 부속서 D (국제조사기관): 전체
- 부속서 SISA (국제조사기관(보충적 조사)): 전체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AT, AU, CA, CL, CN, EA, EG, EP, ES, FI, IL, IN, JP, KR, PH, RU, SA, SE, SG, UA, US, XN, XV

### 연말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국제공개 일정

#### 국제사무국 휴무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제사무국의 주말 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수)

2024년 12월 31일(화)

2025년 1월 1일(수)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4년 12월 26-27일(목-금) 및 30일(월)에 업무를 한 뒤 2025년 1월 2일(목)에 평소처럼 업무를 재개합니다.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Operations Customer Support Section(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PCT Operations Division)의 운영 일자와 국제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정보 서비스

PCT 정보 서비스는 2024년 12월 24일(화)부터 2025년 1월 1일(수)까지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5년 1월 2일(목)에 업무를 재개합니다. 단, 연휴기간 동안 PCT 정보 서비스에 전화하면(전화번호: (+41-22) 338 83 38) 녹음된 안내음성을 통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PCT 정보 서비스에서는 국제출원의 제출과 이후 PCT 국제단계에서 진행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를 담당합니다(특정 출원 관련 문의는 PCT 운영국에 연락).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infoline.html>

###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

연말 연휴기간 동안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의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수):	휴무
2024년 12월 26일(목)부터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2024년 12월 31일(화) 및	
2025년 1월 1일(수):	휴무
2025년 1월 2일(목) 및 이후: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는 출원의 전자적 준비, 제출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들과 관련된 문의를 담당합니다. 문의 대상 서비스들은 ePCT(<https://pct.wipo.int/ePCT/about-epct.xhtml?lang=ko>) 및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https://www.wipo.int/en/web/das>)입니다.
- PCT 운영국은 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에 응대합니다. PCT 운영국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의 대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으시려면 서식 PCT/IB/301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lang=ko>

### 국제공개 일정

PCT 출원은 다가오는 연휴기간 중 2024년 12월 26일(목) 및 2025년 1월 2일(목)에 평소대로 공개됩니다.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동사항의 접수 마감기한은 변동없이 각각 2024년 12월 10일(화) 및 2024년 12월 17일(화), 자정(CET)입니다.

###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4, 영문)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759>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의 지식재산(IP) 활동을 분석한 권위 있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과 WIPO로부터 집계한 2023년도 출원, 등록 및 갱신에 관한 통계를 토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품종 보호 및 지리적 표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업계자료를 토대로 창조경제 현황을 조명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4/927(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5.html](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5.html)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국제기관 품질보고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각자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sup>2</sup>. 아래에서 2023년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 PCT 출원인 가이드 개선

PCT 출원인가이드의 여러 부속서들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전반적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후주/미주(endnote) 및 모든 부속서 내 관련 정보가 모든 체약국 및 관청들에 대해 각 부속서 텍스트 본문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으로 자료 제공방식이 개선되고 검색 효율성이 증대되어 연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부속서와 요약부분에 보통 파란색으로 강조되는 변동/업데이트 사항들이 전체 통합 내용에도 적용됩니다. e 가이드(eGuide, PCT 출원인가이드 전자버전)에서의 변동사항 강조방식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23/09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3/newslett-2023.pdf>).

여러분의 의견은 귀중합니다. PCT 사용자 및 관청께서는 [pct.guide@wipo.int](mailto:pct.guide@wipo.int)로 의견과 건의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지속적인 개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조사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안들

Q: PCT 출원을 하고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받았습니다.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서 국내단계에서 특허보호 취득 가능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국제조사는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제조사의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ISR)에 기재됩니다. 국제조사기관(ISA)은 또한 견해서(WOSA)를 작성하여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공합니다. 국제조사는 출원인에게 관련 선행기술을 알려줌으로써

<sup>2</sup>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31 및 21.32에 따름(<https://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출원인이, 국내단계에서 특허보호를 추구하기 전에 국제단계에서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을 갖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이후에 취할 모든 조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현 출원 단계에서 내가 가진 선택안들을 보다 잘 파악하고 PCT 시스템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 고려하실 만한 일반적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IB)에 PCT 제 19 조에 따라 청구범위의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는 국제사무국이 공개하며, 국제조사기관은 두 번째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가 국제단계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 뿐입니다.

국내법에서 임시보호를 규정하는 지정국가에서의 임시보호를 위해 청구범위를 보다 잘 정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최초 출원 시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기한은, PCT 규칙 46.1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즉, 발송일)로부터 2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해당 기한의 만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이러한 보정서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 제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 (i) 최초에 출원된 청구범위를 대체하는 청구범위 전체
- (ii) 출원 시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간 차이를 기재한 서한. 해당 서한에는 최초에 출원된 출원의 특정 부분들(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한 구체적 인용과 함께 청구범위 보정의 근거도 기재해야 합니다.
- (iii) (선택사항) 보정사항과 해당 보정사항으로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설명하는, PCT 제 19 조에 따른 설명서. 이러한 설명서는 공개됩니다.

(ii)의 서한과 (iii)의 설명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내용을 아래 PCT 뉴스레터 2010/09 호 유용한 도움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9.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9.pdf)

### PCT 제 2 장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sup>3</sup>

또한 PCT 제 2 장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PCT 규칙 53 과 연관해 PCT 제 31 조 참고).

PCT 규칙 54 의 2에 따라, 제 2 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 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sup>3</sup> 우루과이가 기탁한 가입서에는 자국이 PCT 제 2 장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유보가 포함되어, 2025년 1월 7일 또는 이날 이후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해 제출된 모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우루과이는 자동 선택되지 않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또는 국제예비심사 동안, PCT 제 34 조에 따라 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견해서에 제기된 의견에 관한 주장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견해서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관련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표 2(Table II) 참고 (<http://www.wipo.int/pct/en/docs/fees.pdf>)).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작성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II)에 반영되며,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사본을 수령해 해당 선택관청들에 전달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를 고려하시면, 아래 두 개 PCT 뉴스레터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4 호: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 - 제 1 부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4.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4.pdf), 8 내지 11 페이지)
- 2010/05 호: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 - 제 2 부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5.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5.pdf), 8 내지 11 페이지)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 비용 없이 비공식적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결론에 답변하기를 원하시면, 마찬가지로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은 국제단계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출원파일에 포함된 문서로서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되는 때 WIPO 의 PATENTSCOPE 에서 공중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단계에서 해당 비공식 의견을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는 지정관청에서 결정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해도 이와는 별개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 동안 해당 비공식 의견이 고려되기를 원하시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해당 비공식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CT 뉴스레터 2015/01 호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13.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13.pdf)

###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내단계 진입 기다리기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 결과를 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제조사보고서나 견해서에 출원의 특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용문헌이나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부정적인 인용이나 견해가 있다고 해도 이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단계에서 출원인들은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단계들이 수행되는 때로부터 적어도 1 개월 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PCT 제 28 조 및 제 41 조 및 규칙 52 및 78 중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경우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에

확인된 문제들을 국내단계에서 특정 지정관청들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의 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유럽 특허청(EPO) 간 시범시행**

### PCT 정보 업데이트

**GH** 가나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IR** 이란회교공화국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ME** 몬테네그로 (관청명)

**PT** 포르투갈 (수수료)

**RU** 러시아연방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EPO),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정정사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 PCT에 관한 예정된 웨비나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일부 PCT 수수료 90% 감면 적용 가능성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을 위한 자료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12월 | 2024/12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PCT 공개출원 5백만 건 돌파

운영 47주년을 맞은 특허협력조약(PCT)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5백만 번째 PCT 공개출원을 기록함으로써 PCT 와 WIPO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5백만 번째 공개출원의 출원인은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는 2024년 4,000건에 가까운 국제출원으로 최다 PCT 출원인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발명은 “화상을 처리하는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PCT/KR2024/095488, WO/2024/242518)에 관한 것으로, 사진 이미지를 안정화해 보다 선명한 휴대전화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출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detail.jsf?docId=WO2024242518>

다伦 唐 WIPO 사무총장은 “5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면서 WIPO의 PCT는 블루투스에서 로봇,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기본 아키텍처와 크리스퍼(CRISPR), 생명을 구하는 백신, 그리고 오늘날의 전기자동차에 이르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발명들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PCT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얻고자 하는 혁신가라면 누구든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며, WIPO는 전 세계 출원인과 잠재적 신규 사용자들을 지원해 가장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소중한 천연자원인 인간의 창의성을 실현시킨다는 PCT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CT의 5백만 번째 특허출원이 PCT 운영과 거의 같은 기간에 혁신과 기술, 창의성을 발휘해 경제 변혁을 이룬 대한민국에 기반한 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처럼 지식재산에 따른 혁신은 인류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이라고 다伦 탕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2024년 12월 2일자 WIPO 보도자료 PR/2024/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ko/articles/2024/article\\_0018.html](https://www.wipo.int/pressroom/ko/articles/2024/article_0018.html)

##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글로벌 창의성을 위한 디자인 보호 간소화

지난 2024년 11월 22일, WIPO 회원국들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디자인 보호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디자인 보호 과정은 나라별로 상이해, “등록 디자인(registered design)”으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특허법에 따라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써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보호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의 IP 관청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따라야 하며, 또한 디자인권의 속지적(territorial) 성격 때문에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각 국가나 지역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막바지 협상이 진행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으로, 디자이너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자국과 해외 모두에서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과 혁신을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2024년 WIPO 회원국들이 채택한 두 번째 조약입니다. 다伦 탕 WIPO 사무총장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 신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로써 디자인 등록 과정이 특히 소규모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위해 크게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제사무국 휴무일

PCT 규칙 80.5에 따른 기간의 계산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제사무국의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21일

2025년 5월 29일

2025년 6월 9일

2025년 8월 1일

2025년 12월 25일

2025년 12월 31일

상기 휴무일은 국제사무국에만 해당되며, PCT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지역관청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청들의 2025년 휴무일은, 해당 정보가 국제사무국에 제공된 경우 아래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ClosedDates.xhtml?lang=ko>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WG/12/2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국제사무국은, 참여 수납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수수료 정보를 확정해 송부해야 하는 기한과 전달 대상 수수료 목록 송부 기한 및 해당 목록의 수수료 액수를 확정해 국제사무국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해야 하는 기한이 월별로 표시된 2025년도 공동일정표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업로드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12월 5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5년 1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EUR 및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 EUR 107 USD 117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 EUR 53 USD 58

항공우편 추가요금: ..... EUR 11 USD [변동 없음]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 개론 (2025년 1월 버전)

WIPO가 제공하는 PCT에 관한 원격학습 기초과정(DL101PCT)이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업데이트되어, 모든 언어 버전을 2025년 1월 초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PCT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 개요를 담은 것으로,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이해도와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과정 모듈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을 원하시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

WIPO 아카데미의 연례 휴무로 인해, PCT에 관한 원격학습 기초과정 및 지식재산에 관한 WIPO 아카데미의 다른 온라인 과정들에 대한 신규 접수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규 등록 접수는 아래에서 2025년 1월 중순에 재개됩니다.

[https://www.wipo.int/academy/en/courses/distance\\_learning/](https://www.wipo.int/academy/en/courses/distance_learning/)

## 유용한 도움말

### 재정난으로 인한 우선권 회복 신청

Q: 저는 특허 대리인인데, 제 고객이 힘든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재정난에 빠져서 제게 우선권 기간의 만료 일주일 후에 PCT 출원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PCT에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입력하니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회복 대상이라는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우선권 회복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권이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A: 우선권 회복은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에, 또는 국내단계에서 각 지정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서(PCT/RO/101)의 제 6 기재란을 작성하거나, 또는 보통 우선권 기간의 만료로부터 2개월인 PCT 규칙 26의 2.3(e)에 따른 해당 기한 내에 수리관청에 별도의 서한을 제출해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에 우선권 회복 신청 시 출원인은, 충족하고자 하는 기준을 유념하며 우선권 기간내에 해당 국제출원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서(statement of reasons)를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26의 2.3(b)(ii)). 그러한 기준은, PCT 규칙 26의 2.3(a)(i)에 규정된 “적절한 주의(due care)”를 기울인 것, 또는 이보다 덜 엄격한, PCT 규칙 26의 2.3(a)(ii)에 규정된 “비고의성(unintentionality)”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 기준은 출원인이 합리적으로 신중한 출원인이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취했을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고의성” 기준은 출원인이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의도적으로 미제출한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충족됩니다.

어느 경우든, 수리관청은 우선권 기간의 만료까지의 사실과 상황만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권 기간의 만료 후에 내려진 결정이나 벌어진 상황은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면, 일찍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지 않고 우선권 기간이

만료된 후까지 출원을 연기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던 경우 비교의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논리적으로 적절한 주의 기준 역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경우에서, 재정난 때문에 분명 고객은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수리관청은 이런 재정난을 초래한 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권 기한을 놓친 직접적 이유만 살필 것입니다. 출원인이 우선권 기한 내에 출원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경우 출원인은 기한을 놓친 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규칙 26의 2.3(a)(ii)에 규정된 비교의성 기준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비교의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기에, 규칙 26의 2.3(a)(i)에 규정된 더 엄격한 적절한 주의 기준 역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 재정난과 관련해,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국제출원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비용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PCT 규칙 14.1(c), 15.3 및 16.1(f)).

일반적으로 수리관청은, 수리관청이 적용하는 우선권 회복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서식 PCT/RO/158(우선권회복 신청에 대한 거절의사 통지서 및/또는 선언서나 기타 증거 제출요구서)을 발행해 출원인에게 거절의사를 알리고 동 청이 정한 추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추가 기한이 만료된 후에야 수리관청은 최종 판단을 내리고 서식 PCT/RO/159(우선권회복 신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발행해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각 수리관청은 자체적으로 견별 분석을 진행하며,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www.wipo.int/pct/en/texts/pdf/ro.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ro.pdf))은 수리관청이 이러한 우선권 회복 신청을 다룰 때 따를 보편적 지침을 몇몇 전형적인 상황의 예시 및 고려사항과 함께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http://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

일부 수리관청은 해당 우선권 회복 관련 규정이 자국의 국내법과 상충한다고 PCT 규칙 26의 2.3(j)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해, 이에 따라 이들 수리관청에서는 우선권 회복이 불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sup>1</sup>. 상충사실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어 있는 해당 관청들의 목록은 아래에서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PCT 규칙 26의 2.3(a)(i)에 규정된 적절한 주의 기준의 충족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20/0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0/newslett\\_2020.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0/newslett_2020.pdf)

지금까지는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이 우선권 회복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만 다루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출원인은 국내단계에서 각 지정관청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기회도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 신청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15/09호 유용한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

<sup>1</sup> (역주) 한국 특허청 수리관청 포함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기존 양방향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연장(유럽 특허청(EPO) 및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INPI))**

**신규 양방향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 유럽 특허청(EPO) 및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독일 특허상표청**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독일 특허상표청**

###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의 4.1)**

**PCT 규칙 82의 4.1(d)에 따른 통지 (스페인 특허상표청)**

###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 (수수료)**

**EP 유럽 특허청 (EPO Web-Form Filing 운영 종료)**

**KZ 카자흐스탄 (위치 및 우편주소, 인터넷주소, 국제출원 사본 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수수료)**

**SA 사우디아라비아 (수수료,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동 청의 요건에 관한 내용)**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에 관한 웨비나 녹화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